

## 제22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0. 6. 18(금), 16:00 ~ 19:5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율곡관 204호)

3. 참 석 : 총 13명 중 10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박영무 의장, 주동표 부의장, 오동석, 이재호, 조종열, 박철균, 김용호, 임원형, 이해진, 김관균 평의원(이상 10명)
- 불참 평의원 : 박윤규, 박상호, 임재수 평의원(이상 3명)

4. 회의안건(논의사항)

- 안건1. 대학의 펀드 및 회계 부정 조사위 보고 및 관련 사항 토의
- 안건2. 약학 대학 설립 관련 재정 보고 및 관련 예산 계획 논의
- 안건3. 종합관, 병원 웰빙 센터, 임상수기센터 건설사 계약과정을 포함한 건축 진행 보고 및 관련 예산 논의

5. 개회선언

**의장 박영무** : 재적평의원 13명 중 10명의 평의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안건은 대학의 펀드 및 회계 부정 조사위 보고 및 관련사항 토의, 약학 대학 설립 관련 재정 보고 및 관련 예산 계획 논의, 마지막으로 종합관, 병원 웰빙 센터, 임상수기센터 건설사 계약과정을 포함한 건축 진행보고 및 관련 예산 논의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요청 하였지만, 대학본부는 약학 대학 설립 관련 재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종합관 등 건설사 계약과정을 포함한 건축 진행 보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필요한 후속조치는 논의를 해서 따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드 관련하여 교수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순일 교수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근태** : 제가 회의 진행발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회의에 대해서 펀드와 감사 관련되는 부분은 지난 번 자문회의의 예결산 자문의 연장으로 해서 기획팀에서 기록을 하고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팀에서 계속 남아서 회의 참관을 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왜,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시지요?

< 간서명 란 >



**간사 김근태** : 현재로서는 펀드 이외에 약대와 종합관 부분은 논의하고 토의하는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회의록을 남기고 참관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박영무** : 기획팀은 규정에 따라 평의회회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참석하여 기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 우선 펀드 관련해서 발표를 위해 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끝난 다음에 논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하 파워 포인트 자료를 제시하면서 보고하는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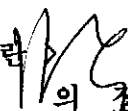
**이순일 교수** : 보고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자연과학부의 이순일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도 작년에 평의원이었고, 그 당시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자료가 제공되었던 적이 없었고, 사실이 규명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지난 결산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었고, 증빙서류를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밝혀낸 사실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주요 자료를 학교로부터 입수한 것이 아닙니까?

**이순일 교수** : 학교 측으로부터는 어떤 자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것은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입니다. 교과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사학진흥재단에서 결산자료를 받았습니다. 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계좌별 잔고증명서가 가장 결정적인 증빙자료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통해 학교가 지금까지 정보를 공개한 방식이나 내역, 실상, 그리고 펀드투자와 관련하여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르다고 한 사실이 보고서의 제목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학교는 지금까지도, 또 작년 평의회 회의록을 보셔도 233억원의 펀드투자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을 매입한 총 액수는 353억원이 됩니다. 작년 회의록을 봐도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이따 보여드릴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나타나지만, 취득한 유가증권 중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가증권들의 원금 손실 가능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의 주장을 수용해서 원금 손실 위험성이 적은 부분을 합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93억원이 남게 됩니다. 매입액에서 6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총액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보기에 핵심적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 간서명 란  의 장

첫 번째는 펀드 투자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무책임하게 투자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그 사실 자체를 덮기 위해서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보여드릴 것은 도대체 지금까지 대학본부가 펀드투자와 관련하여 밝힌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펀드투자가 작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당시 평의위원회가 2008 회계연도 결산 자문을 하면서 펀드투자 내역 공개 요청을 했었습니다. 펀드투자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2008년도 2차 추경예산 자문을 하면서 자금운영수수료라는 항목을 발견하면서입니다. 자금운영수수료라는 항목이 처음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정도 수수료를 내려면 뭔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 번도 학교는 그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언론사에서 펀드투자 손실에 대한 보도가 나와 문제가 되니까 '6개 증권사의 16개 계좌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 까지만 학교가 밝혔습니다. 학교가 작년에 공개한 것은 유일하게 이 표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좌수가 16개인데 1개를 환매해서 현재는 15개가 남아있습니다. '16개 계좌에 233억원을 투자했다' 학교가 공표했던 사실은 이거 하나입니다. 아마 평의원 중 몇 분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평의위원회에 참석하신 총무처장께 계속 질문을 해도 답변은 '이 표 이상은 밝힐 수 없다' 였습니다. '펀드투자 내역이 뭐냐? 밝힐 수가 없다. 언제 샀느냐? 밝힐 수 없다. 재원은? 밝힐 수 없다.' 그게 평의위원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올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펀드 중에 20억 원짜리 하나를 환매했기 때문에 현재 펀드투자 총액은 213억원이라는 학교의 발표뿐입니다. '펀드는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유일하게 학교가 밝힌 입장입니다.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숫자는 주가변동에 따른 평가손 변동 추이입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코스피 지수이고, 뒤에 나오는 숫자가 평가손실액입니다. 작년 결산을 앞두고 2009년 2월 7일자로 교과부에 보고하던 당시에는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손실액이 103억원이었습니다. 학교가 평가손실액을 밝히는 것은 주로 주가가 좀 회복이 되어서 그나마 형편이 나을 때입니다. 학교는 '올해 손실액이 41억원이니까 손실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더 기다리면 손실이 없어질 거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평가손이 41억원일 때는 언제인가 하면 주가가 1,700 후반일 때입니다. 다시 주가가 내려가니 보시는 것처럼 손실이 57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평가손실이 주가가 회복되면 줄어들고, 주가가 내려가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묶여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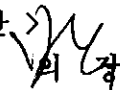
< 간서명 람  의 강

때문에 쓰지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펀드투자 때문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펀드들을 취득한 것이며 재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가 언제 펀드 매입에 관한 결정을 내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데, 이 점도 한 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09학년도 결산자문을 할 때 처음으로 펀드투자 시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왜 그동안 펀드투자 시기를 밝히지 않았는지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7년 2월부터 11월사이에 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바뀌어서 대학이 펀드를 사도 되도록 허용된 것이 언제나 하면 2007년 1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펀드를 산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총장직무대행 이름으로 나온 해명서라는 것을 보셨을 텐데, 거기서 보면 국어사전의 낱말정의를 들어 예치라고 하는 거에 펀드를 사는 것도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에 계신 여러 경영학 교수와 경제학 교수들께 전문가적 의견을 묻는 대신, 국어사전을 들어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2007년 12월 28일 이전의 펀드 취득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법 개정 취지문을 보더라도 그때부터 펀드라는 상품에 투자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개정 전에는 펀드 투자가 허용된다는 근거가 없고, 개정 후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도 앞부분에 나타나는 채무증서와 뒷부분에 나오는 펀드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2007년 12월 28일의 개정에서도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을 댔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을 총무처장 전결로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처장이 학교 통장을 관리하니까 학교 자금의 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유하면 여러분께서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제일은행 아주대학교 출장소에 계좌를 열면 당연히 관리인은 출장소장, 지점장입니다. 하지만 그 계좌의 소유자는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계좌에 적립된 자금을 지점장이 마음대로 투자한다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불법횡령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발전기금에 들어가 있는 자금은 많은 부분 적립한 주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대학원과 같은 독립운영부서들이 적립한 것이 명백한 발전기금들을 총무처장 전결로 투자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 간서명 란



겁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 자금이 집행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생각해보면, 지출결의 없이는 단 1원도 쓸 수 없습니다. 지출 결의서가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 투자동의를 얻었는지 계속 질문을 해보았지만 한 번도 학교로부터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펀드투자 사실이 감춰질 수 있었을까요? 이는 결산 자료 공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관심을 가진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여러 자료가 공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의 학교소개를 보면 결산 자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산정보가 연도별로 쭉 나와 있으니, 평의원들께서는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4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산학협력단회계가 있어 결산서 네 개가 따로따로 작성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산감사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PDF파일들이 첨부되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2007 회계연도의 결산자료입니다. 결산감사 보고서 중에서 외부 감사보고서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는 것으로, 우리학교의 경우에는 성도 회계법인이 맡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속하는 감사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외부 및 내부 감사보고서와 똑같이 중요한 것이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입니다. 평의원회에서 결산자문을 받으라는 것은, 평의원회에게 결산내용이 정말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립학교법 개정의 가장 주된 취지 중의 하나로, 대학평의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결산 자문입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놓은 항목이 바로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입니다. 즉, 2007회계연도까지는 이런 형태로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이 분명히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여 드리는 까닭은 그 다음해의 공시 내용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펀드문제가 불거진 2008 회계연도 결산자료 공시에는 놀랍게도 같은 부분이 공란입니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파일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히 평의원회에서 자문한 결과가 평의원회 회의록으로 첨부되어 있었는데, 2008 회계연도에 보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반드시 평의원회 자문 결과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없이 어떻게 교과부에 결산자료를 제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위가 사학진

< 간서명 란 >  


흥재단에 찾아간 겁니다. 도대체 제출된 결산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받았는  
 지 문의했더니, 학교가 제출한 결산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제출한 결산부속서류들의 표지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사본, 내부감사보고서, 외부감사증명서가 다 제출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 깜  
 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표지와는 달리 대학평의원회 회  
 의록이 없었습니다. 사학진흥재단 관계자가 확인을 위해 그 자리에서 학교법  
 인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인의 해명은 왜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사  
 본이 첨부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사회 회의록 사본에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있다  
 고 해도,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위  
 서류입니다. 백 수십 개의 학교가 결산자료를 제출하므로 사학진흥재단에서  
 는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답니다. 결산부속서류에 제목에 저렇게 있으니까 대  
 학평의원회 회의록 사본이 누락된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사회 회의록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서문호 당시 총장의 발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회계인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예·결산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2008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학내사정으로 인하여 기일 내 관할청에  
 결산 보고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지 못하고  
 교무회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걸 사유로  
 해서 평의원회 회의록을 누락시킨 겁니다. 여러분, 학내사정이 뭔지 아십니  
 까? 여기 이해진 평의원과 김관균 평의원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평의원에  
 서 펀드투자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 학내사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회의를 세 차례나 하면서 평의원회에 자료를 갖고 와라, 공개해라 한 것이  
 서문호 전총장이 말한 학내사정입니다. 자료 공개하라고 요구했더니, 자료는  
 내놓지 못하겠고 결산보고 기일까지 해결도 못하겠으니 그냥 대학평의원회  
 자문없이 결산보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법적으로 평  
 의원회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누락시킨 채로 부속서류 표지만 첨부된  
 것처럼 작성한 것입니다. 누락 사유도 마치 대단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했지만, 사실은 펀드투자 자료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었  
 을 뿐입니다. 그런대도 이렇게 결산자료 제출을 한 겁니다. 저것만 문제가

< 간서명 란 >



있느냐? 이상한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자료 공개를 안 할까? 뭐가 문제일까? 제가 지금부터 결산대차대조표 부속서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공시되는 자료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홈페이지에 공시된 결산자료에 보면 대차대조표 바로 아래에 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시는 ‘현금 및 예금명세서’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서 특히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여기 ‘유동자금’ 이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처럼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는 유동자금인지 아니면 특정기금인지 자금의 종류가 구분되어 명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 현금 및 예금명세서 입니다. 현금 및 예금명세서가 6~7페이지 붙는데, 각 페이지 마다 여러 개의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이 한 가지 의문이었습니다. 여기 밑줄 친 숫자가 2개 있습니다. 왼쪽 것은 유동자금으로, 오른쪽 것은 특정기금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숫자를 읽어드릴 테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왼쪽 것은 1,812,283,285원으로 숫자가 10개 입니다. 무작위로 숫자 10개를 골라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른쪽 특정기금 것은 2,033,200,000원으로, 이 숫자도 우연히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 주목하는 까닭은 2008 및 2009 회계연도에는 그 형식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펀드 문제가 불거진 2008년 결산 자문을 할 때부터, 숫자로 가득찬 표가 6~7페이지에 걸쳐 나오던 현금 및 예금명세서가 딱 12줄짜리 표 하나로 바뀝니다. 2008년도 현금 및 예금명세서를 보면, 유동자금과 특정기금으로 자금의 종류를 분명히 분리해 놓았습니다. 또한 자금 중 일부가 의과대학에 속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특정기금을 보시면 재미있는 항목이 보입니다. 예금과목이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그리고 기타예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종류를 열거하는데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기타예금이 등장하고, 그 액수가 233억원인 것입니다. 이 액수가 바로 학교가 주장하는 펀드투자액입니다. 펀드투자를 한 것이 왜 드러나지 않았느냐, 바로 펀드투자를 예금으로 기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금 및 예금명세서 표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바로 2007년까지 현금 및 예금명

세서에 보이던 열거된 숫자들이, 잔고증명서에 나타나는 결산시점의 각 계좌별 잔액이기 때문입니다. 각 계좌별 잔액을 보면 몇 개의 계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형식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아무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및 예금명세서가 한 페이지짜리 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작년에 233억원이 펀드에 투자된 사실이 들어나자 올해는 예금과목을 특정예금, 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수익증권 및 펀드라고 변경했습니다. 펀드 투자했다는 것이 발각되고 나니까, 작년에 기타예금이라고 했던 것을 올해는 수익증권 및 펀드라고 바꾼 겁니다. 그리고 옆에 예금이라고 써놓습니다. 펀드가 예금입니까? 학교는 작년과 올해 이렇게 현금 및 예금명세서를 작성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억원을 환매했기 때문에 213억원이 수익증권 및 펀드에 남아 있지만, 이것을 예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 총장직무대행께서.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을 하면 까닭이 있기 마련인데, 부속서 형식을 왜 바꾸었지? 바꾼 내용이 뭔가 하고 보니까, 계좌별 잔액기록이 아니라 임의의 기준에 의한 합산액으로 현금 및 예금명세서를 작성한 겁니다. 왜 임의냐? 도대체 왜 수익증권 및 펀드가 기타예금에 들어가 있는지, 무슨 기준에서 어떻게 분류했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지만 펀드 중에는 주식펀드, 채권펀드, 부동산 펀드가 있고 그냥 채권을 구입한 것도 있는데 아무 기준도 없이 다 더해서 233억원 또는 213억원 이렇게 기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 책임 하에 법인, 대학, 부속병원 계정의 결산을 확정하고 동시에 교과부/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며 공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단이 회계결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학교 회계의 현금 및 예금명세서를 저렇게 작성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공시된 법인과 부속병원 계정의 결산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2008년 법인의 결산자료를 찾아보니, 놀랍게도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 자금의 종류, 예금의 종류, 그리고 국민은행, 제일은행, 제일은행, 제일은행, 우체국, 국민은행 등으로 예치기관을 다 밝힙니다. 또한, 수시입출, 양도성 예금, 당좌예금 등으로 구분을 다 밝힙니다. 계좌번호가 다 있습니다. 예치금액이 다 있습니다. 저게 정상적인 현금 및 예금 명세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유가 증권



도 다 씁니다. 대우전자 몇 주, 주가는 액면가와 장부가액을 다 구별해서 씁니다. 주식, 채권, 예금 다 별도로 썼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다른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총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는 대우전자가 잘 나갔으니까 장부상에는 대우전자의 주가가 높는데, 실제로는 가치가 얼마 안 됩니다. 장부상 가격은 허수입니다. 없는 돈입니다. 그것을 투자유가증권총당금으로 반영하여, 즉, 부채로 잡아서 현금이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법인이 이렇게 다 한 겁니다. 똑같은 법인이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왜 대학은 그렇게 못했나 의문입니다. 병원계정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현금 및 현금등가물명세서에 예금의 종류, 예치은행, 계좌번호, 금액 다 써 있습니다. 유가증권명세서에는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액면가액, 장부가액 등으로 종류와 금액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유독 대학만 다를까요? 이전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달리 회계를 작성한 것이지, 우연히 또는 경험이 없어서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걸 사학진흥재단과 교과부에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 저게 형식에 어긋난다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큰 의문이었습니다. 조사위가 사학진흥재단에 가서 자료를 입수하고는 저희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한 형식입니다. 아까 법인이나 병원이 한 것처럼 자금의 종류, 구분, 용도,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치금액, 만기일이 다 있습니다. 교과부하고 사학진흥재단에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공시한 자료, 그리고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대학평의회 자문을 받겠다고 가지고 온 자료하고 다른 방법으로 기장을 하고 그것을 교과부에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놀랍죠? 왜? 이것을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유동자금에서 아까 제가 기억해두시라고 했던 숫자인 1,812,283,285원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펀드 계좌번호까지 다 나와 있고, 그게 하나대투증권에 있다는 게 기장되어 있습니다. 저게 정상적인 형식입니다. 이렇게 밝히기 싫으니까, 한 페이지 12줄짜리 자료에다 금액을 다 더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부속서를 아무리 밝히라고 해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이시죠? 유동자금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특정기금을 가지고 펀드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자신들이 작성한 결산서에 유동자금으로 18억원 부동산펀드를 산 것이 보입니다. 나중에

이걸 다 합산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바로 분식회계라는 겁니다. 주식회사가 결산자료를 신문에 공시하는데, 실제 하고 다른 것을 공시하면 그게 분식회계입니다. 투자자들을 오도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교내구성원들을 오도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대학평의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기만당한 겁니다. 올해도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교과부에는 사실대로 보고한 걸까? 최소한도 부속서는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알게 된 사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작년에 펀드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경영지원과에서 3월 25일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부분만 제가 확대했습니다. 제목을 읽어드리면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 운영 현황보고 서식 작성법 추가안내>입니다. 5월 1일자로 교과부에 결산을 보고하는 거니까, 교비회계 중에서 적립금을 투자하고 운용한 것을 이런 식으로 보고해라 하고 2009년 3월 25일에 내려온 겁니다. 평의회 자문은 저 날짜보다 뒤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교과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올해도 저 지침에 따라서 결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스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문1) 기말적립금액의 기재방법. 답변) 필히 운용형태별(예금, 채권, 주식, 수익증권 및 펀드, 파생금융상품)로 기재, 예금으로만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명시적인 지침입니다. 예금으로만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했는데, 아주대학은 예금으로 233억원 기장을 한 겁니다. 이 지침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언제 투자한 액수를 시가로 공개할거냐에 관한 사항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보면 ‘용도별 적립금 재원으로 총 취득한 유가증권 투자원금의 1/2이하 손실’ 여부가 공개 기준입니다. 지침은 이런 겁니다. 기금의 총액이 문제가 아니라 기금 종류별로, 즉 건축기금, 연구기금, 퇴직기금, 학생기금, 장학기금, 발전기금이 있으면 각 기금별로 총액의 반까지만 투자하고 투자한 금액의 반 이상 손해나면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1/4이상 손실이 나면 공개하라는 겁니다. 작년에 왜 공개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학교는 교과부 지침에 따랐다, 바로 기금의 반을 안 넘게 투자했고 손실이 투자액의 반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 안하는 거다’ 라며 바로 이 지침을 근거로 댔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문의 위에는 예금으로만 기장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무시하고, 아래의

<간서명란>



공개기준만 입맛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이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옆에는 또 뭐가 있냐하면, 그래서 그 운용현황을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퇴직기금과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가 우리학교의 경우에는 발전기금입니다. 이게 학교가 제출한 형식입니다. 우선 전체를 보시면, 예금과 수익증권 및 펀드 외에는 중간에 숫자가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죠? 숫자가 하나도 없는 항목이 뭐냐 하면 채무증권(채권), 지분증권(주식),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이것들도 산 게 있으면 여기서 쓰라는 겁니다. 지침이 있고 보고양식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수익증권펀드 아니면 예금이다, 채권 하나도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파생상품 하나도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것도 교과부의 명시적인 지침을 어기고 허위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분식회계입니다. 조금 있다가 내역들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찾아낸 사실을 표로 정리한 겁니다. 아까 6개 기관이라고 그랬죠? 여기 칠해놓은 부분이 하나대투, 대우증권, 우리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 하이투자에 있는 펀드계좌들을 다 더한 각 기관별 총액입니다. 이걸 학교가 밝힌 게 아닙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부속서와 잔액증명서를 입수해서, 계좌번호 하나하나를 맞춰서 만들어낸 표입니다. 잠시 후에 증거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6개 기관에 233억원입니다. 103억원 평가손실액입니다. 학교가 주장한 것 다 찾아낸 겁니다. 6개 기관에서 매입한 펀드 233억원에서, 103억원 손해가 나서 남아있는 평가액은 130억원이다. 학교가 밝히지 않은 것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계좌가 더 있더라는 것입니다. MMT(Money Market Trust)라는 겁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Money Market Fund라고도 할 겁니다. MMT 계좌가 하나대투증권에 1개, 우리증권에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매입한 채권 15억원과 삼성증권에서 장기채권 투자한 20억원도 찾았습니다. 더 깜짝 놀란 것은 하이투자에서 산 이머징마켓펀드입니다. 채권펀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신흥시장채권펀드, 그것도 20억원짜리가 2개 있는 겁니다. 이 액수가 얼마나? 학교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유가증권 구입액이 추가 120억원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233억원에 이 액수를 더하시면 350억원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학교 해

< 간서명 란



명서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채권은 손해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그나마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적은 Money Market Trust는 뺐시다. 우체국 채권도 뺐시다. 그래도 60억원이 남습니다. 왜 하이투자 신흥시장채권펀드가 문제냐 하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성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계좌당 원금이 20억원인데 작년 결산 시점에 평가액이 17억2천만원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펀드당 2억8천만원의 손실이 난 겁니다. 저거 일반적인 채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전투자가 아니죠? 5억원 이상 손실이 난 겁니다. 왜 삼성증권은 채권인데 안 뺐느냐? 제가 아까 여러분께 무엇을 요청 드렸냐 하면, 숫자 중에 2,033,200,000원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증권 채권액이 2,033,200,000원입니다. 10개 숫자가 우연히 일치하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도 다 계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걸 어디서 샀다는 얘기냐 하면, 바로 발전기금에서 산 겁니다. 아까 제가 유동자금과 발전기금이 있는데, 발전기금에 2,033,200,000원 나오는 것 말씀드렸죠? 그런데 교과부 보고서양식에는 채권을 하나도 기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18억원이 문제가 됐던 부동산 펀드이고, 이게 발전기금에서 산 삼성증권 채권 20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손실이 나는 펀드를 가지고, 없다고 그러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입수했던 증빙자료입니다. 잔고증명서라고 쓰여 있죠? 아까 7페이지씩 나오는 숫자가 몇 십 개 있는 것, 그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잔고증명서에 나오는 결산일의 잔액을 다 열거한 겁니다. 사실은 계좌번호까지도 다 밝히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걸 다 합산해서 얼마 손실이 났는지 어디에 돈이 들어갔는지 모르게 한 것이 작년과 올해 결산을 한 방식입니다. 고객명, 수익증권, 결산보고용, 종목명, 피델리티 글로벌부동산증권펀드, 굉장히 놀랍죠? 학교가 펀드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2개 이상이 부동산증권펀드입니다. 정상적인 펀드투자를 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부동산 펀드를 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부동산이냐? 해외부동산펀드입니다. 언제? 2007년 2월과 3월. 문제가 된 펀드투자를 결정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그겁니다. 놀라운 게 그것만이 아닙니다. 18억원 투자했다고 한 거 보셨죠? 그런데 잔액증명을 보면 원금 17억9천4백만원입니다. 아까보신 28억원이라는 숫자는 18

억원과 10억원의 합입니다. 여기는 원금이 얼마죠? 9억9천만원. 왜 원금이  
 다른지 봤더니 선취수수료가 있습니다. 펀드를 매입할 때 수수료를 먼저 떼  
 는 겁니다. 이 펀드가 이익을 내든 손해를 내든 상관없이 매입 시점에서 수  
 수수료를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18억원 여를 갖다 줘도 18,122,832  
 원 수수료를 뺐으니까, 학교가 주장할 수 있는 원금은 사실은 17억9천4백  
 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수료는 장부에 기장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기만입니다. 왜냐? 수수료도 계정을 잡으면 결산서에 드러  
 나야 하니까, 수수료가 있으면 왜 이만한 수수료가 있느냐 질문이 나오니까,  
 그걸 피하려다 보니까 수수료를 원금에 더해서 결산서를 작성한 겁니다. 우  
 리 학교는 한번도 18억천만원짜리 부동산펀드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  
 리가 산 것은 17억9천만원짜리입니다. 18억천만원짜리는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것도 분식회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좌를 맞춰서 찾아낸  
 결과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학교가 주장했던 6개 증권사에 16개 계좌  
 펀드투자를 확인했습니다. 233억원 거기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것 말고  
 추가로 7개 계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색깔을 달리 하여 표시하였습  
 니다. 우체국 채권 하나와 하나대투 MMT 하나, 우리증권 MMT 2개는 학  
 교가 주장하는 대로 원금 손실이 안 난다고 인정해 주도록 합시다. 하지만  
 그래도 해명서라는 것에서 틀림없이 거짓말 했다고 드러나는 것이, 보여드린  
 것과 같이 하이투자 채권펀드 2개에서 원금손실이 더해서 5억원 이상입니  
 다. 이걸 고위험성투자입니다. 삼성증권 채권 20억원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  
 럼 발전기금에서 산 겁니다. 그런데 교과부에는 채권은 한번도 산 적 없다고  
 거짓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더하면 60억원이고  
 나머지가 한 60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33억원에다가 이 문제가 있는  
 60억원을 더하면 그게 293억원입니다. 백보양보해도 293억원을 유가증권  
 에 투자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가증권의 원래 어의대로  
 이것까지 더한다고 하면, 학교가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돈은 353  
 억원이 됩니다. 유가증권 수수료 기장을 누락하고, 원금에 합산하여 기장했  
 다. 이거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분식회계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아직  
 도 드러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파생상품, 즉 선물환입니다. 선물환 계약이  
 있는지 증명하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 이사회 회의록을 봤으면 작년에

이미 선물환 투자를 자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이런 사실들을 결산서에 명시하지 않은 분식회계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자, 펀드투자 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다르죠? 펀드투자 한 사실 밝히지 않았죠? 이거 다 분식회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까 233억원을 교과부에 보고할 때 전부다 특정기금으로 투자했다고 표를 채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것을 매입재원별로 재정리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교과부에 보고하는 형식에는 재원을 부속서에 써놨기 때문에, 재원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아까 자금의 종류가 유동자금인지 특정기금인지 다 명시되어 있었죠? 그거를 갖고서 다시 맞춰보니까, 문제가 됐던 해외부동산 18억원은 유동자금으로 산 겁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제일 분노케 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유동자금, 뭘니까? 학생들 등록금입니다. 학생들 등록금 올리는 건, 그 1년의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들 교육하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랄 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돈 받아서 18억원 해외부동산을 샀습니다. 또 파워리서치랩,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주식형펀드인데, 무슨 무슨 랩하는게 뭐냐하면 포트폴리오 짜주는 회사입니다. 그냥 어디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머리 굴려서 짜줘 하면서 높은 수수료 내는 상품입니다. 대우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형펀드를 사면서 일임형입니다. 네가 알아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줘. 그렇게 산돈이 얼마냐 하면 53억원입니다. 이거는 결산서에서 자금의 재원과 계좌번호에 의해서 유동자금으로 추적이 가능했던 53억원을 쓴 겁니다. 우리 학교 등록금이 1% 오르면 약 7억원이 더 들어옵니다. 53억원이면 7%~7.5%의 등록금인상분에 해당합니다. 이 만큼의 등록금 인상이 왜 필요했느냐? 투자하려고! 더 황당한 사실은 결산보고서에 이 53억원의 펀드도 발전기금에서 샀다고 기록해놓은 것입니다. 유동자금에서 산 53억원을 발전기금에서 산 153억원의 일부라고 기록한 겁니다. 이 숫자, 조금 있다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특정기금에서 산 것은 230억원에 해당하는데 이중에 어떤 것은 연구기금에서 매입한 것으로 어떤 것은 건축기금에서 매입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위는 굉장히 조심한다고 해서, 재원을 추적할 수 없는 것은 추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우증권 10억원은 재원이 어딘지 모른다고 분류해 두었습니다. 왜 모르냐? 대우증권에 3개의 계좌가 있다가 그

중 2개의 계좌를 청산했는데 어느 것을 청산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원을 저희가 모른다는 겁니다. 전체 293억원을 저희가 다 찾은 겁니다. 제일 많은 돈이 발전기금 153억원이라고 하는 건데, 명백하게 53억원은 발전기금 아니죠. 발전기금은 아까처럼 적립주체가 있는 돈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발전기금에서 투자가 된 거라면 독립운영부서에서 지출결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투자동의서가 있어야죠. 저걸 총무처장 전결로 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지점장이 통장에 있는 돈을 이전 내 전결이야 하고 마음대로 투자한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연구기금은 교수님들이 외부에서 연구비 받아오면, 거기서 오버헤드를 떼서 모은 돈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 모았다가 학교에서 연구지원 하는데 쓰라고 옮겨오는 겁니다. 저건 연구처장께서 지출결의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지출결의 했느냐 물어봐도 한 번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액이 293억원이기 때문에 60억원의 투자 사실은 결산서에서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선 한 게 뭐냐? 서둘러서 환매했습니다. 펀드투자가 문제가 돼서 지적 받으니까 기금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위원회가 펀드환매 여부 또는 시기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결산자료 검토를 하면서 기금운영위원회를 한 적이 있느냐 문의하니까, 3번 회의 한 적이 있다고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한 번도 환매에 대해서 논의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60억원을 누락시켰으니까 빨리 흔적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 외에는 달리 환매를 결정할까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저 때가 환매할 시점이었느냐? 무슨 근거에서 환매를 했느냐? 적절했다면 나머지 233억원은 왜 남겼는가? 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평가금액의 시점은 언제예요?

**이순일 교수 :** 작년 말 평가결산 자문하던 당시입니다. 뒤에도 나오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채권과 펀드 상품 중 일부는 아예 보고에서 누락했고, 유가증권의 매입재원은 허위로 보고했습니다. 왜? 손실 공개를 피하고자 한 겁니다.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금별 반 이상 투자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주장하는 기금별 투자액수들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절묘하게 각 기금의 반을 안 넘기는 액수입니다. 60억원, 즉 20억원씩인 추가투자된 3개의 내역들을 어디에 집어넣어도

손실액이 기금의 반을 넘습니다. 결국은 법령의 기준을 회피하려고 수를 내도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60억원의 유가증권 매입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기장누락을 한 겁니다. 이런 행위가 분식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펀드투자를 해도 어떻게 학교가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느냐는 논란이 작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동산이 국내 부동산이 아니라 해외 부동산이라면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달러 기준으로 이것을 샀습니다. 그리고서는 선물환 계약을 했습니다. 선물환 계약이라는 것은 파생상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달러로 되어 있죠, 297만달러어치 해외부동산을 사고 나서 선물환 계약을 했습니다. 선물환 계약이 뭐냐? ‘297만불의 달러를 내가 판다, 달러가 내 수중에 없지만 내가 판다’ 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할 때 달러당 925.6원에 판다고 했는데, 정산할 시점에 가서 보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 버린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싼 달러를 싸게 판다고 했으니까 차액을 현금으로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손실액 6천3백9십만원이 2008년 2월 16일자로 발생한 겁니다. 확정손실입니다. 외상으로 달러 팔아놓고서, 달러 값이 내가 판다고 한 것보다 비싸지니까 그 차액을 물어주게 된 겁니다. 학교가 실제로 6천4백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결산서에 기장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를 선지급금, 수수료라던가 투자손실이 아니라, 선지급금이라는 항목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놀랄 일인데, 그리고서는 그 계약을 1년 연장한 겁니다. 아차 싶으면, 이거 선물환은 할 게 아니구나 하고서 계약을 종료했으면 여기서 손실 끝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1년 연장합니다. 그랬더니 환율이 1,390원까지 올라서 딱 1년 후인 2009년 2월 16일에는 손실이 13.3억원이 됩니다. 이것도 확정손실입니다. 저건 주가가 회복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없는 달러를 허수로 매각 주문해서 발생한 차액을 내는 거니까 저건 확정손실입니다. 6천3백만원과 13억3천만원, 그러니까 14억원의 손실이 난 겁니다. 저건 부동산펀드가 깡통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추가손실이고 확정손실입니다. 이걸 미공개 한 겁니다. 미공개 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계약 당시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돈을 안 준거다, 소송을 하겠다’ 고 한 겁니다. 그런데 법적 하자가 뭐냐 하면, 부동산 펀드를 담보로 제공한 것입니다. 선물환이 없는 달러를 파는 거니까, 그냥 되겠습니까? 담보를 잡습니다. 가치가 300만불 가까이 되는 부동산 펀드를 담보로 해서 선물환계약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학교법인이라도 학교 교육용 자산을 담보로 맡기려면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학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총무처장 전결로 부동산 펀드를 담보로 맡겼다는 겁니다. 선물환계약, 이거 파생상




품인데 교과부 보고에서 누락했고, 손실 발생한 거 아무데도 기록하지 않았고, 불법으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분식회계를 통해서 이런 일을 다 숨겨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이름 있는 회계 법인에서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교과부에 제공하는 외부감사보고서에 이런 사실이 없을까? 저희가 외감보고서를 달라고 했더니 처장들이 ‘외부감사보고서는 법인이 의뢰해서 만들어진 법인소유물이니까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 고 했습니다. 학교에는 외부감사보고서가 하나도 없느냐고 문의했더니 ‘우리는 보여줄 수 없다’ 고 얘기 했습니다. 또한, 아까 보신 홈페이지에 공시된 결산자료에 보면 외감보고서가 있는데, 공시된 자료를 봐서는 펀드투자에 관한 사실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수한 것을 보면 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한 자료에는 특정기금에 관해 추가 설명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외감보고서 앞부분이 3페이지 정도의 주문이라면, 뒤에 붙는 주석이 모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몽땅 빼놓고 공시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주석에 있는 겁니다.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교과부에 보고한 내용대로입니다. 기말 장부가액 기준으로 연구기금 61억원중에서 20억원 투자해서 9억원 손해났다, 건축기금 156억원 중에서 60억원 투자해서 24억원 손해났다, 발전기금 320억원 중에서 153억원 투자해서 69억원 손해났다. 이렇게 교과부에 보고했고, 성도회계법인도 그렇게 주석에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성도회계법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학진흥재단의 적립금 투자손실 인식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따라 1/2 이하로 하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평가충당금은 설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누락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우선 투자액이 반을 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억원짜리를 어디다 집어넣어도 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집어넣으면 투자액 40억원 되죠, 여기다 넣으면 투자액 80억원 되죠, 여기 넣으면 170억원 되죠, 어디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20억원짜리 계좌 3개는 펀드투자한 것으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석에다가 기록해놓는 편법을 썼고, 주석은 공시에서는 누락한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최소한도 회계법인이면, 아까 사학진흥재단의 이 규정을 알고 있다면, 유가증권 투자액이 20억원이면 나머지 41억원은 예금인 것을 확인해야하죠? 예금이 아니면, 채권인지 파생상품인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채권을 매입했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회계법인이 무능하거나, 공범이거나. 채권기장을 누락한 것을 못 찾아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외감보고서 공개를 거부한 학

< 간서명 란 >



교도 절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식회계에 외부 회계법인, 외부감사, 대학이 다 동조 했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재단이 진짜 몰랐겠느냐 여기서 또 기막힌 게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작년 276차 이사회회의록, 다시 말해서 결산자문이 끝난 다음에 열린 결산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그 중에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그 의미를 몰랐는데, 올해야 암호해독이 됐습니다. 여기 외부감사인 윤성복 감사의 발언 내용 중에 한 줄을 제가 크게 써놓았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두 번째 줄입니다. ‘2008회계년도 감사와 관련하여 아주대학교는 기금 562억원과 일반 유동자금 407억원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총액 중 수익증권 등 위험자산에 총 293억원을 투자’ 하고 있다. 위험자산에 293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학교는 233억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밝힌 것은 293억원이죠? 채권 20억원, 이머징마켓펀드 20억원짜리 2개. 외부감사도 위험자산 투자액이 293억원이라는 것을 자인한 겁니다. 작년에만 해도 저희는 실상을 전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완전히 알리바이를 만든 거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선물환투자 얘기했죠? 여기 ‘2007회계연도에 별도로 체결한 파생상품선물환 계약이 14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미 작년에 자인한 겁니다. 저걸 읽어보면 선물환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조언했느냐, ‘기금의 손익과 유동자금의 손익이 분리되어 표기 되어야 하겠다’ 저게 상식이라는 것을 외부감사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랬으면 53억원이 유동자금에서 나왔으면 53억원은 유동자금이 재원이라고 기록해야지, 바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293억원중에서 53억원은 특정기금이 아니죠. 학교가 주장하는 233억원 중에서 53억원은 유동자금에서 나온 것이란 것을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말은 분리되어 표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부속서 주석에다가는 전부 발전기금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감사도 공모를 한 거지, 몰랐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공모했던 증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 올해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작년에 이런 것을 알았으면 올해는 고쳐져야겠죠. 근데 뒷걸음질 칩니다. 자기 입으로 위험자산 투자액이 293억원이라고 했으면서도, 올해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윤성복 감사는 ‘보유펀드 233억원’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작년에 고백해 놓고도 딴 소리 하는 겁니다. 이는 외부감사도 재단과 학교와 공모를 해서 분식회계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펀드투자 때문에 생긴 손실액입니다. 이전 추산한 거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지적해주십시오. 첫째 이 표에는 뭐가 안 들어가 있느냐, 평가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간서명 란 > 

100% 원금환매가 가능하다고 가정해도 이만큼의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평가손이 있으면 여기에, 형편이 좋으면 40억원 나쁘면 60억원 가량이 더 붙는 겁니다. 만약에 293억원을 2007년에 펀드투자하지 않고 정상적인 트리플A 채권을 샀다면 이자수익이 얼마나 될까? 이율 5~6%로 계산했습니다. 이 이율의 근거는 재단예산안을 심의한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재단이 자신들의 예산을 짤 때, 이자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자율 6%입니다. 재단이 6% 이자를 받으면 학교도 같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겠죠? 273억원에 대해서 6% 이자를 3년간 계산하면 약 50억원이 됩니다. 273억원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는 까닭은 293억원 중에 발전기금이 재원인 채권 20억원은 장기채권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2007년에 취득하여 아직 못 팔았으며 앞으로도 더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해도 이자수익을 상실한 기회비용이 40~50억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선물환 손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평가손과 관계없이 확정손실이 14억원입니다. 부동산펀드, 저건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2007년 2~3월이 언제냐 하면 부동산 버블이 최대에 달했을 때입니다. 지금도 보면 펀드평가액이 40~5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이 봐줘서 손실이 절반이라고 봅시다. 그럼 30억원입니다. 펀드 운용 수수료, 아까 말씀드렸죠? 수수료가 있는 것을 계속 숨겨왔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파워랩, 일임형, 사모펀드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보통의 경우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1~2%라고 계산하면 최저 8억원, 최대 16억원입니다. 저건 손해가 나던 이익이 나던 상관없이 매년 떼어가는 수수료입니다. 펀드가 깡통이 되더라도 계속 떼어가는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치졸하게 분식해놓은 선취수수료, 이미 돈을 쥐 놓고서도 따로 기장하지 않고 원금에 더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찾아낸 것만도 6천만원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추정하는 손실이 94억~110억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펀드 평가손을 더하면 쉽게 150억원 내지 160억원의 손실을 우리 학교가 입었다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냐, 우리학교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의원들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지난 번 결산자문회의 자리에서 나온 얘기와 같이 연말이 되면 종합관 건설비로 194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부상에 있는 돈,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자문 때 보신 것과 같이 올해 사학진흥재단에서 50억원을 기채하는 겁니다. 현금이 모자라면 또 기채할지 모릅니다. 그럼 발전기금에서 빠져나가면 괜찮은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학교 예산구조를 보면, 건축기금과 발전기금은 등록금에서 적립하는 겁니다. 재단이 적립한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펀드투자에서 발생한 손

실을 어떻게 해결할거냐? 장부상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3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 통장의 돈 내가 써서 적자났어, 통장에 적자로 기록할게’ 하고 독립운영 부서에게 전가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 학교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의료원에서 돈을 더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와 비슷한 일이 올해 벌써 벌어졌습니다. 발전기금 중에서 교육대학원이 적립한 60억원을 이미 건축용으로 뺏기 때문에 펀드 투자한 금액이 기금의 반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매년 병원에서 의과대학을 위해 전입하는 경상비 중에서 70여억원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갖다 뺐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그 돈이나 그 돈이나 어차피 의대가 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당장 올해 펀드투자 내역을 공개해야 되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때와는 달리 병원에서 의대에 주는 돈 중 일부의 명패를 바꿔단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 등록금 인상입니다. 물론 등록금 인상할 때야 기금손해 때문에 했다고 안 하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돈이 있으면 안올릴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원인은 펀드손실까지 추적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일을 왜 학교가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아주대학교에 ‘적립금 운용 관리 지침’ 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기 편하게 크게 확대했습니다. ‘적립금의 예치관리-적립금은 일반 운영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2010년 2월말 현재 예치(투자)되어 환매할 수 없는 자금은 각 기금별로 배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실이 생긴 펀드투자 재원이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건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너희가 얼마 산거야, 너희는 얼마 산거야’ 하고 배분한단 말입니다. 발전기금 적립주체들한테 ‘너희 원금에서 가져가 투자했으니 너희 적자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사후 입법입니다. 투자에 동의한 적도 없고 지출결의를 한 적도 없는데 ‘손해는 가져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어느 하나의 대상에게 저 많은 손실을 다 전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 3가지 방안을 혼용해서 각 대상에게 미치는 부담이 퍼지게 만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는 펀드투자에서 나타나는 것같이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대학을 운영한 사실이 분식회계를 통해 감춰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의 운영은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펀드투자 및 분식회계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여러 사람이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재단에 있습니다. 왜? 결산자료를 확정하고 보고하고 공시하는 것은 재단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기준으로 재정 상태를

< 간서명 란 >




파악하는 게 이사장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다. 펀드투자 및 손실 발생 사실을 분식회계를 통해 감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학교 안에 괴담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재정긴축이 벌어질 거다, 학교발전은 끝났다’ 등의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6월 1일에 있었던 교무회의 자료입니다. 약학대학 신설 관련한 특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교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만 2건 이루어 졌습니다. ‘첫 번째는 펀드문제에 대해 추가로 보고하다’ 이고, ‘두 번째는 약학대학 신설과 관련된 특별보고를 하다’ 입니다. 누가? 총장직무대행이. 아주대학교 구성원들이라면 약학대학을 따기 위해서 다 같이 한마음으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학생들도 유치성공을 기원했고, 의대에 계신 분들과 다른 단과대학에 계신 분들도 다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총장직무대행은 2011학년도 약학대학 신설에 따른 주요 추진계획(학생정원, 전임교원 확보, 교육·연구공간 확보 계획, 교육용기계장비, 약학대학 재정운용계획안 등)들에 대해 위원들에게 상세 설명하고, 본 회의는 향후 약학대학 운영과 관련한 우리대학의 실천사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법과대학장은 약학대학의 공간 등에 대해서는 구성원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무회의는 아주대의 모든 일을 심의·의결하는 최고기관입니다. 그런데 심의의결을 한 것이 아니라, 총장직무대행이 실천사항을 확인한다고 보고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천사항이니까, 보고한 대로 한다는 것이고, 이걸 확인한다는 겁니다. 확인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2010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교비회계에서는 연평균 30억원씩 건축 운영하여 약학대학의 소요예산을 조달함’ 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약학대학 재정계획을 세워오면 그때 재논의하자며 약학대학의 발족을 보류시켰습니다. 그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그걸 받아서 직무대행이 한 얘기가 교비회계에서 연평균 30억원씩 건축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발전기금이 남아 있으면 발전기금에서 내면 되는 겁니다. 아주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약대가 필요하면 재단이 내면 되는 겁니다. 2010학년도에도 건축운영 한답니다. 올해 예산은 확정되어 이미 한 학기 대학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뭐 한다고요? 30억원 건축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평의원으로 예산자문 하셨습니다. 2010학년도 예산에 대해 자문하셨고, 최종안 정도 되어야 대학이 운영될 거라고 하신 거 아십니까? 거기서 30억원 건축 운영한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교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야죠, 이거 만약에 나중에 추경에 가져오면, 교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도 하지 않았는데 총장직무대행이 확인했다고 추진하실 겁니까?

< 간서명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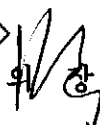


펀드손실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재단이 얼마나 무책임하냐? 이해진 의원과 김관균 의원께서는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제가 평의회를 하면서 왜 재단이 법정부담금 안내느냐 하는 소리를 하도 해서 지겨우실 겁니다. 2004년도에 법정부담금 2.67억원 냈습니다. 그때 법정부담금을 내야하는 액수 14.05억원 중에서 19%만 냈습니다. 맨 날 뭐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시되어 있는 법인일반업무회계 기타자산명세서를 보면, 2004년에 뭐한 줄 아십니까? 골프장 회원권 삽니다. 1억5천4백만원가지고 골프장 회원권사면서, 그 해의 법정부담금은 19%밖에 내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것도 사지 말아야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학생들 교육에 쓰는 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법인이 무책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두 분은 역시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2차 평의회 회의록을 보시면 평의원들이 강력히 요청해서 그동안 법인이 내야하는 것을 학교가 교비로 대납한 내용을 작년 일자로 정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게 누적된 돈이 얼마나? 토지구입 하는데 교비가 35.7억원, 법정부담금 대납에 1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것은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펀드 투자해서 손실이 100억원 가까이 납니다. 그 동안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한 금액이 100억원입니다. 토지구입비로 36억을 부담합니다. 이러니 아주대학교가 발전하면 이상한 겁니다. 건물이 올라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뭔가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서서, 교비로 부담한 이런 돈들을 재단이 형편이 좋아지면 먼저 변제한다는 약속을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병원은 이런 약속을 받아서 재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313억원이라는 재단이 갖다 안긴 부채를 이자만 내고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액수들 말고도 학교가 부담한 78억원의 부채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78억원의 부채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건축비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학교의 건축비, 예를 들어 체육관 평당 건축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료에 따라 바뀌는데, 450만원에서 600만원입니다. 1992년 이후에 새로 올라간 건물들인 팔달관과 다산관은 그 당시 민간 분양되던 아파트들보다 평당 건축비가 비쌌습니다. 학교 건물들의 특징이 뭐니까? 토지구입비가 안 들어가죠? 그런데도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종합관 건설비도 한번 따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 재단이 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경우라면, 재단이 책임을 다 못해서 미안하다고 밝히고 그것에 상응해서 권리를 좀 제한해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간서명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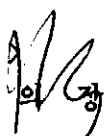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재미있는 거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번 5월 20일 결산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문제들을 하나도 못 찾아냈는데도 ‘이사장: 감사님의 심도 있는 업무감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무대행: 보유펀드의 2010년 4월말 평가손실액이 19.4%로 줄어들었다.’ 고 되어 있습니다. 펀드투자과 관련하여 잘못된 해명을 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적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솔직한 인정도 없이 주가가 회복되어서 평가손이 줄어들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 펀드문제는 학내에 많은 부분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사장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결산자료가 분식 되어 있는데 분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자료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오해에 근거한 겁니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 다음 말도 기막힙니다. 왜 아까 그런 교무회의 회의록이 만들어졌느냐? 펀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장직무대행께서 ‘교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설명했고 학생들에게도 여러 차례 설명했다’ 고 합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사장 : 올해부터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도록 하였기에 기금별로, 투자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매월 내부 결산 후 그 손실액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작년도 결산 이사회 회의록 보여드렸죠? 거기서 이미 지적된 사항입니다. 2008년도 결산에서 지적되었으면 2009년도 결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안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또 바뀌었습니다. 2010학년도에는 펀드투자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시적으로 못 박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작년에 감사가 지적하면 그렇게 할 일이죠. 그 다음 말이 아주 기막힙니다. ‘이사장 : 예산은 결손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데 2010년 예산에는 이미 평가 손실만큼 부족한 것이므로’ 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손실 났으니까 손실난 걸 알죠, 그러면서 2010년도 예산에 왜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는 걸 알면서 예산을 짜놓고, 이제 와서 평가손실만큼 부족하니까 ‘특정 기금의 사용용도가 건축기금 발전기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면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추경을 통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한테 예산 자문 받으러 올 때는 손실난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엉터리 같은 자료를 갖다가 자문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은 총장직무대행은 ‘말씀하신 부분은 경리팀과 예산팀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 간서명 란 >



고 발언합니다. 이라고 나온 게 30억원 긴축입니다. 없는 돈을 포함해서 예산을 짠지니까, 어디선가 빈 거를 메워야 되는 거죠. 왜 제가 재단이 무책임하다고 하느냐? 요번 이사회 회의록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2009회계연도 대우학원 수익회계 이익잉여금 처분안’ 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재단은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법정부담금을 못 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대우학원의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회계는 크게 법인수익사업, 아주대학교 부속병원 회계, 아주대학교 및 아주자동차대학교내임대 및 이자소득 등입니다.’ 학교 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대학의 임대수입 계약 주체를 법인으로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결산시점에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안내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임대사업을 법인이 가져가서 순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회의록의 다음 부분을 보면 ‘당기말 현재 대우학원 수익사업회계의 전기이월결손금은 1,026백만원, 209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3,775백만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전기이월결손금을 빼도 처분전이익잉여금이 2,749백만원입니다. 이제는 장부상에도 2,749백만원 이익이 난 겁니다. 지금까지 장부상 10억원 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수익 37억원에서 10억원을 빼도 이익이 27억원입니다. 이제 장부에 결손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최소한 37억원 수익이 잡힙니다. 임대료 올리면 수익이 더 늘어납니다. 그럼 약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30억원을 여기서 내면 됩니다. 법정부담금 더 내면 됩니다. 학생지원금 더 내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니까? 그 아래를 보십시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5년내 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기에 2009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2,749백만원 전액에 대하여 대우학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법인 목적사업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건 법인이 적립하겠다는 겁니다. 등록금 올리겠다고 하면, 법인이 이제 돈 있으니까 법정부담금 내라고 하십시오. 법정부담금 안 낸 것만 받아내도 등록금 올릴 필요가 많은 부분 사라집니다. 우리 재단의 이번 펀드투자 문제와 관련한 행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사용했습니다. 짧게 보고하려다가, 그래도 중요한 일이라 부연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학교 주장하고 달리 최소 293억원 상당의 펀드 또는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큰 손실이 난 까닭은 펀드매입과 자산관리가 놀랄 만큼 무지하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펀드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 안의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현명하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비밀리에

< 간서명 란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펀드투자를 숨겨올 수 있었던 것은 분식회계를 통해서 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분식회계를 가장 엄벌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회계가 투명해야 잘한 결정과 잘못된 결정이 드러나는데, 분식회계를 하게 되면 이런 사실들이 다 감춰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자료를 보시면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분식회계는 재단, 학교, 외부감사가 다 같이 협조, 최소한 묵인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분식회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문제고, 이제부터 덮고 가자고 하면, 절대 문제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이 뭔지도 모르는데, 병을 덮고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번 펀드투자 및 분식회계 건은 반드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손실이 났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재정적 위기에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교내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 동의를 얻으려면 도대체 우리의 실제 재정 상태가 어떻다는 것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뜬금없이 30억원 건축재정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약대 신설을 위해서 얼마나 자금이 필요한데 우리는 얼마를 낼 수 있고 얼마는 모자란단, 이런 정보가 믿을 수 있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교내구성원들에게 고통을 나누자고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공개된 결산자료는 이미 몇 년간 심하게 분식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로는 지금 아무 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는 네 사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제 전공은 물리학입니다. 제가 회계를 어떻게 압니까? 실험데이터의 조작 여부를 찾는 기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정돈인데, 회계전문가가 더 상세히 보면 뭐가 어느 정도까지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 꼭 당부 드립니다. 외부회계전문가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다시 하지 않으면, 우리 학교의 실제 재정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공시된 결산자료는 믿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제도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대학평의회를 만든 목적은 투명한 대학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에 걸쳐 경험한 것은 대학평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들입니다. 예결산 자문과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분식된 자료를 갖다 주고 자문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대학평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기만한 겁니다. 최소한 대학평의회 차원에서 ‘두 번 다시는 기만하지 않는다, 기만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는 약속을 학교와 재단으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 간서명 란 >



대학평의원회에는 학생대표, 직원대표, 동문대표가 모두 다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후속조치를 대학평의원회에 제안합니다. (1) 펀드투자 및 분식회계에 대한 진상조사, (2) 회계 감사의 재실시, (3) 평의원회에 대해 충실한 정보공개 및 기만행위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것이 교수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고, 그에 기초하여 대학평의원회에 드리는 제안입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

**이순일 교수** :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정 : 식사)

**의장 박영무**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순일 교수의 교수회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 조사 보고서 <펀드투자 비리 및 분식회계(accounting fraud) 실상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평의원회 보고서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평의원 이재호** :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 펀드투자 비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잘못되고, 무책임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과 비리라는 표현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비리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잘못된 펀드투자와 분식회계,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리라는 제목으로 앞서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용과도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제목에서 비리라는 단어는 삭제하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수정한 제목의 보고서를 평의원회의 공식보고서로 채택하는 안에 동의하십니까?

**평의원 임원형** : 다른 의견은 아니고, 보고서를 많이 신뢰하고 있고 학생들이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생하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법대 회장이라든지 경영대 학생들 등 다른 학생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학생들이 보고서에 의존하는 게 있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에 대한 근거 자체를 한번 확인해야할 거 같고요, 여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전화를 해서 한번 더 확인

<간서명 란 >

하는 걸로, 확인한 다음에 혹시나 다른 게 있다면 의견을 드리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 후에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지금 동의하고 추후에 자료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말씀해주시지요.

**평의원 오동석** : 평의원회 이름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문제 같은데요? 대다수의 평의원회이 채택하게 되면 두 분 학생 평의원의 의견이 달라도 평의원회 의견으로 채택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행동은 평의원회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학생대표로 활동하시는 거니까 별개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대표로 오셨지만 평의원회 구성원인 평의원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표결에 참여하시는 문제하고 학생대표로 행동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철회를 유보하고 동의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평의원 임원형** :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지요.

**평의원 이재호** : 이진 그러면 우선은 회의록에 부속서류로 되는 거죠?

**의장 박영무** : 모든 분들이 동의 하셨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이 보고서를 평의원회가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되었다는 의미는 회의록에 첨부되고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이순일 교수도 하신 말씀인데, 회계부정은 없어야 겠으며 정확한 자료가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평의원회에서 보고하는 모든 자료들, 특히 예산 결산자료들은 정확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학본부 측에서 평의원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의장 주동표** :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선언 이외에 강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평의원 박영무** : 현재에는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평의원회 규정을 개선해서라도 분식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증하는 담당자나 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라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평의원회 활동을 통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토의 안입니다. 지난 번 평의원회에서 내부감사를 평의원회와 공동으로 해서 철저하게 사실을 밝히고 의문을 풀어야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이재호 의원께서 학교측과 감사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그것을 보고해주시죠.

**평의원 이재호** : 회의 자료 4쪽을 보시면 21차 아주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평의원회와 학교당국이 공동으로 자체감사를 하고 그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는 교과부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하고, 감

사단의 구성은 의장단에게 위임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 결정된 사항을 평의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평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내용으로 지난 번 평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결의에 근거해서 2주 전에 대학본부에 내부 감사 시행에 대해서 요청공문을 보냈었구요. 그래서 학교측과 대화를 했습니다. 실제 내부감사를 어떤 형식으로 어떤 기간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서 최종 요청사항을 정리해서 보낸 내용이 4쪽 상단과 중간에 있습니다. 평의회가 의장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감사의 성격은 대학평의회 결의 및 요구에 따라서 공동 특별감사를 하자, 목적은 이렇고, 내용은 투자 결정 과정,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 회계 처리에 하자가 있는지 보겠다, 기타 감사단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 그 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단의 구성은 평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대학본부에서 3명 추천해서 감사단장은 감사위원 중 호선을 하자, 그리고 회계감사 부분, 펀드 관련해서 회계감사 부분은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되 대학본부와 협의해서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용도 보시면 결국은 감사결과보고는 대학평의회와 본부에 동시 제출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결한 내용이 공동으로 자체감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보내온 최종적인 학교의 입장 공문이 5쪽에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 가. 감사의 성격을 학교 자체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내부 일반감사로 하고, 감사의 대상은 예를 들어 전년도 수감사항 중 일부를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반 구성은 평의회 추천위원은 한 사람으로 하고, 5~7명으로 구성하고, 감사반장은 총장이 지명하고, 일주일 동안하고 보고는 총장에게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매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감사 규칙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논점의 차이라면 감사의 성격을 매년 시행하는 정기 감사의 일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특별감사의 형태로 할 것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회계감사를 제3의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평의회 의장이 제안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는 회계감사는 곤란하다, 현재 법인의 회계를 맡고 있는 성도회계법인에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안 풀리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런 내용이어서 상당히 시각차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보셨다시피 펀드 문제에 관련해서는 성도회계법인, 재단의 감사까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분들한테 의견 요청을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은 사실은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에

서 얘기된 내용은 그냥 일반 자체감사를 한번 더 한다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이렇다, 말하자면 양쪽 물러나기 어렵다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번 평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 박영무 :** 이재호 평의회께서 협의 과정을 설명해주셨습니다. 4페이지 내용이 근거 자료입니다. 지난번 평의회 회의록에서 기록되어있듯이, 이 사안은 일반감사로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 감사는 일반 교직원들의 잘못이라던지 부정에 대해서 시행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 사안의 원인 규명에 전임 총장, 재단까지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하이어나키(Hierarchy)상 일반적인 자체 내부감사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사원이나 교과부등 외부 감독관청의 감사를 받아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충실하게 자체 내부 감사를 하고 그 후 미흡한 점이 있으며 외부에 감독관청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회의록에 근거해서 이 사안에 대한 감사의 성격은 특별감사이며 목적은 첨부한 자료와 같으며 감사 방식은 반드시 현재 학교에서 의뢰한 회계법인 이외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가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번 평의회에서 결정했던 것처럼 자체 내부감사는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없으므로 의미가 없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 시간 낭비일 뿐으로 생각됩니다. 자체 내부감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작년에 시행된 내부 감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난 회의록에 기록된 것처럼 외부 기관의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외부 감독관청의 감사 기관으로는 교과부 감사부서, 총리실 감사실, 감사원이 있습니다. 오동석 의원 말대로 교과부도 부정확한 회계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적절한 감사기관을 어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의견을 좀 주시죠.

**부의장 주동표 :** 공동감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학교 당국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의장 박영무 :** 학교 당국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서류가 이것입니다.

**평의원 오동석 :** 외부 감사를 보면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상이하다고 하면서 왜 적절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시해놓고도 면책용인 거 같고, 또 밑에는 적절하다고 했다면, 지금 하고 있는 회계감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

서 다시 자기가 감사하는 것이므로 공정성이 의심스러워서, 별도의 회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윤성복 법인 이사회 감사는 회계의 잘못을 인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시정하도록 지적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내부 감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으로 평의원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일종의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교수회나 학생, 동문회, 평의원회 대표를 낸 주체들에 의해서 권고의 형식으로 조치를 요청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 문제도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평의원회 이름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평의원회 규정에 감사 요청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평의원회는 학교의 중요한 기구로서 대학에서 부정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학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사실을 대학본부가 구성원들에게 숨기고 부정한 자료를 제시한다면, 평의원뿐만 아니라 구성원은 누구든지 사안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것은 구성원들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이면 부정을 규명할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관련 행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를 할 수 있듯이 대학의 중요 기구로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감독관청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처리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의원 임원형** : 내부 감사를 할 경우 내부구성원이 참가하거나 할 수 있나요?

**의장 박영무** :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평의원 김용호** :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안이 교과부감사하고 또 두 가지가 뭐 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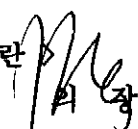
**의장 박영무** : 교과부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와 국무총리실 감사지요, 세 가지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선정하여야겠지요.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연구해봐야겠습니다.

**부의장 주동표** : 어디다 요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면서 설불리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의장단에 위임을 해주시면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주동표** :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학교는 알고 있습니까?

**의장 박영무** : 네, 지난 번 회의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평의원 김용호** : 오늘 결의할 내용이 외부감사를 요청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인가요?

**의장 박영무** :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의장단에 위임해주시면 전문가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펀드 관련 공동 감사(안)에 따르면 감사단 구성에서 대학평의회 3인, 대학본부에서 3인을 제안했다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의장 박영무** :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사실은 공동 감사(안)을 내기 전에 관련 처장들하고 3번을 만났습니다만 끝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로서는 최대한의 양보된 안을 내어놓겠다고 한 것이 4페이지의 내용이고, 학교에서 최대한의 양보된 안을 내놓은 것이 5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펀드와 회계부정에 대한 교수회의 지적에 대하여 총장직무대행이 두 차례 해명과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모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감사원, 총리감사실, 교과부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곳도 있습니까?

**의장 박영무** : 저는 일단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더 들어봐야겠지요. 세 군데의 감사규정이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에 의견(주요 감사 사안 제시 등)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요구사항을 매우 디테일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평의원 임원형** : 감사의 구성이라던지 대상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평의원 오동석** : 적절하기로는 관할구청이 교과부니까, 교과부에다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거기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구성원의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거기서 알아서 구성하겠죠. 우리는 참관인 구성에 대해서만 제시할 수 있겠죠.

**평의원 이재호** : 나눠서 의결할까요? 외부에 의뢰할 것이냐, 어느 기관에 할 것이냐를...

**의장 박영무** : 그럼 나눠서 의결합시다. 먼저 외부 감독 관청에 위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안에 동의하십니까?

**평의원 이재호** : 동의합니다.

**평의원 김관균** : 재청합니다.

< 간서명 란 

**의장 박영무** : 삼청 있으십니까?

**부의장 주동표** : 예

**의장 박영무** :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평의원 이재호** : 표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반대 있으면 표결하고, 없으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이의 없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럼 만장일치로 외부기관에 감사 청구하는 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외부감사 기관의 선정에는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선정을 의장단에게 위임해주시겠습니까?

**평의원 오동석** : 만약에 교과부에서 감사의뢰가 되면 학교가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학교 직무대행에게 알려야 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평의원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학교 내에서 징계라던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데, 그것이 학교 본부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평의원회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부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 통보 내지는 고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의원 이재호** :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서, 꼭 회의록이 나오기 전이라도 딱 요 부분을 정리해서 보내면서, 우리 안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기한까지, 그 날짜로 우리는 외부감사요청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시한을 너무 길게 가질 필요는 없겠지요.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감사청구를 할지 검토하고 결정하는데 한두 주 정도는 걸릴 겁니다. 만약 그 안에 대학평의원회 의장이름으로 보낸 공동감사(안) 혹은 그에 부합하는 안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시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외부로 가는, 이런 것은 어떨까요?

**평의원 김관균** : 외부 감사 한다는 거 자체도 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감사를 어디다 의뢰하느냐, 외부 감사 한다는 것 자체도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 학교 쪽에서 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어디에다 의뢰를 할 것인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의뢰를 하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테고, 외부에 한다고는 이미 의사결정은 된 상태고, 국지적으로 어디다 할지는 한 번 더 조금 기관별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외부 기관으로는 감사원, 총리실 감사, 교과부 감사,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현재로 그 이상은 찾기 어렵습니다.

< 간서명 란 > 



**평의원 오동석** : 감사원이 사립학교 감사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의장 박영무** : 예.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부의장 주동표** : 상당히 전문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장단이 노력을 해주시고 위원회는 위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의원 김용호** : 여쭙보고 싶은 게, 외부 감사 의뢰시 장점과 단점이 될까요? 장점은 제가 알겠는데 단점은?

**평의원 이재호** : 단점이라면 결국은 우리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비해서 생각지 않았던 데미지(damage)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의원 김용호** : 데미지(damage)라고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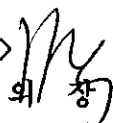
**평의원 이재호** : 교과부에서 예를 들어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는 가능성이 있겠죠. 학교의 데미지(damage)는 가능한 적게 가면서 이 문제가 밝혀지고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필요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학교가 생각하는 감사라는 게 작년 감사와 판박이인데, 그거는 효과적인 감사라는 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감사가 아니라 진실을 덮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덮는다는 게 아니라 구조자체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감사 기간 일주일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문제 핵심을 밝힐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결국 그런 틀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상된 단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김관균** : 외부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의뢰할 때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는 한번쯤 평의회에서 소집해서 의장님께서 A로 하겠다 B로 하겠다, C로 하겠다, 한번 정도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의원 김용호** : 의장님께서 안을 만드시고 한 번 더 소집해서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그렇게 되면 지금 외부에 감사를 의뢰하자는 결정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정 자체가 다음으로 미뤄지는 거 밖에는 되지 않으니깐요.

**평의원 김관균** : 외부로 하겠다는 결정은 났고, A냐, B냐, C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자는 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 의장님이 A로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의원이 C로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논의를 해야지요. 어쨌든 외부에 의뢰하기로 결정이 난 것이고 세 군데 중에서 결정할 건데 중요한 일이니깐요.

< 간서명 란 > 

**평의원 오동석** :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장 가까운 관청이 교과부고, 교과부 위에 총리실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기관에 감사를 청구했는데 잘 안된다면 교과부를 포함해서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가능한 다음에 그 결정을 했을 때 의장단에서 다음 평의원회를 열고 진행한 일을 하는 걸로 전제를 달면 절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부득이하게 평의원회 열기 어렵게 되면, 점점 늦춰지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한 가지 절충안으로 평의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장단점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평의원들이 회람하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평의원 오동석** : 그 자료를 보고 이것은 평의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면 모여서 표결로 결정할 일이라고 하면 열어서 처리할 것이고...

**평의원 이재호** : 이것 가지고 부족하고 평의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리고 그게 다수의 의견이라면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해야겠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사안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주 나쁜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학교가 입을 데미지(damage), 이미지상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의 손상이죠. 현재 시기적으로 나쁜 경우가 나왔을 때 지금 중앙일보 대외평가가 8월초~ 9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입학생들이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게 9월~11월로 시기적으로 그 때와 맞물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 결의보다는 모여서 경과를 이야기하고 증론을 모아서, 어차피 결론 자체가 저희가 의도하는 게 잘못된 시스템의 개선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바로잡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학교 발전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러한 의미라면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평의원 오동석** :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2년 전에만 해도 학교가 정보를 공개하고 멈췄으면 사실은 손실을 훨씬 줄일 수 있었던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또 넘어가게 되면 학교 자체가 견잡을 수 없는 지경에, 파산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학교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존립의 문제일 것 같고, 또 이것을 알고서도 단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고 속인다고 한다면 학교와 똑같은 논리로 동조하는 거죠, 학생을 속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단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 간서명 란 > 

번에 추정 예산할 때도 처음이어서 잘 몰랐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결하  
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덧붙이면 이사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감사를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몰랐다고 하면 감사의 역할을 제대  
로 못한 거고,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면책이 안 됩니다. 이사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평의회 이름으로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박영무 :** 감사가 재단도 같이 관여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는 재  
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에도 내부 제안했는데 안한다고 하니까 외부감사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할지는 세 기관 중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철균  
의원 말에는 제가 강하게 반박을 하겠습니다. 학교 데미지(damage)와 학교  
발전은 다르게 봐야합니다. 이전 중앙일보 한 두 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번 사태도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인정하게  
되는 거고 영원히 시정할 방법이 없다. 팔이 아프면 썩은 팔을 잘라야 합니  
다. 다리가 썩으면 다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평의원 김용호 :** 외부감사를 받은 학교가 있나요?

**의장 박영무 :** 많습니다.

**평의원 김용호 :**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의장 박영무 :** 검색 창에 사학비리 쳐보면 여러 학교가 나옵니다.

**평의원 오동석 :** 청구가 없어도 교과부가 직권으로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죠?

**의장 박영무 :** 우리 학교도 3년전인가 4년전인가 입시비리로 감사를 받았지  
요, 몇 년도입니까?


**기획팀 진성호 :** 2007년입니다.

**의장 박영무 :** 교과부에서 감사를 받았지요. 대학이 감사를 받는다는 그 사  
실 자체가 창피한 일입니다.

**평의원 김관균 :**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지적사항이  
다 공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만 공표가 되고 합니다.

**의장 박영무 :** 오동석 의원이 제안한 것을 다시한번 얘기해보시지요. 교과부  
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 부족하면 감사부에 의뢰를 한다?

**평의원 오동석 :** 저도 아직 자세히 검토를 못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까 회계처리와 관련

< 간서명 란 > 

해서 있었던 게 교과부에 구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교과부에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있으니까 교과부가 관할기관이 아닐까 싶은 거죠. 아마 총리실에 있는 것은 더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직접 감사원에 문제를 가져가는 것보다, 일단 교과부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거기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더 상위의 기관에 다시 감사를 의뢰 하자는 거죠.

**평의원 조중열** : 이거하고 별개로 평의원회에서 담당교수 예를 들면 총무처장, 전직 총무처장, 지금 현재 감추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단과대학장이 징계를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징계를 열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총장이 결정하는 거죠. 평의원회 의장이 예를 들어서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청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영무** : 징계 요청에 대한 평의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감독기관의 법규에 따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평의원 조중열** : 지금은 징계를 상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과대 학장 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단과대 전체가 소속된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의장 박영무** : 이러한 정도의 문제가 제기되면 적어도 교과부에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는 부정을 발견한 한 개인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평의원회가 채택한 공식 보고서에 근거하여 감사를 청구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너무 지연되는 것도 문제니까, 다음 평의원회 날짜를 여기서 확정을 지으시는 것이 어떨까요? 예컨대 2주면 2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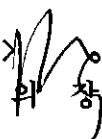
**의장 박영무** : 다음 평의원회까지 의장단에서 안을 만들어서 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외부기관에 감사 의뢰를 하는 것으로 완전히 결정이 난 겁니까?

**의장 박영무** :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오늘의 결정사항을 가지고 변화의 여지가 있는지 촉구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어차피 평의원회 2주 후에 열게 되면, 그 중간에 학교가 이 안을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을 평의원회에서 또 하나의 옵션으로 보고를

< 간서명 란 >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오늘 결의된 대로 외부 감사를 하는데 어느 기관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겠지요.

**부의장 주동표** : 오늘 결론을 보고 학교가 다른 방침을 정한다고 하면 재고할 수가 있겠지요.

**평의원 김관균** : 감사단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감사단 구성에서 재학생을 포함하여 하는 걸로 학교에다가 제시한다거나, 이런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런 형태는 어떨까요. 이전 사실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전문적인 인사를 추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경우 학생이 직접 들어가기 보다는 위원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학생이 같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적절한 전문가를 추천하는데 학생이 참여 하는 형식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평의원 박철균** : 총학의 의견을 존중해야겠지요.

**평의원 이재호** :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번 회의에서 결의한 것은 의장에게 위임하는 거 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각각의 구성원들이 다시 추천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결의한 것을 무력화 하는 것이 되고, 대신에 구성원이 가능하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의장님께서 추천하는 단계에서 같이 협의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학생이 직접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주동표** : 외부감사 의뢰한다고 하면 어떤 단계에서 구성원들이 참여하죠?

**평의원 이재호** : 외부 감사 아니고 만약 학교가 그걸 받아들여질 때 말씀입니다.

**부의장 주동표** :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그건 다음에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내부감사를 하든 외부감사를 하든 학생이 직접 참여는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관...

**의장 박영무** : 참관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조사해달라고 리스트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부기관에 우리가 발견한 자세한 리스트와 요구사항을 전달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주 후에 평의원회를 개최해서 외부감사기관을 어디로 할 건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김용호** : 그럼 지금 이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다시 한 번 학교 측에 물

< 간서명 란 >



어보는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주동표** : 오늘 결정사안이 통지가 갈 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2주 후 회의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의장 박영무** : 결의하기 전이 아니라 결의하고 나서 의견이 나왔단 말이죠.

**평의원 오동석** : 우리가 이미 외부감사에 의뢰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나온 의견입니다.

**평의원 박철균** : 그렇더라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내린 결정이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에서 이재호 의원 말씀대로 결정 사항을 한 번 더 학교에 얘기하고 가능하면 감사원이라든가 교과부에 가지 않고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시간을 두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질문이 있습니다. 내부 감사했을 때 결과가 향후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 증거 효력이 있나요?


**평의원 이재호** : 내부감사를 하면 그 결과만 갖고는 예를 들어 징계를 한다든지 학교 내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만약 그것이 민형사적인 어떤 범법에 해당한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민형사적 소송을 별도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의장 박영무** : 자체내부감사는 대학본부에 제한되며 재단에 대한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엄정하게 감사를 하여도 재단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다면 그 결과는 반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에 대한 감사가 보장 되어야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평의원 김용호** : 그래서 저번에 의결할 때 내부 감사에서 많은 평의원들은 내부감사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바에 의해서 공문이 나갔고, 학교 측에서 회신이 왔을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외부감사가 의결이 난 상황인데, 제 마음 속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이재호 의원이 말했던 그런 부분이 마음 불편한 게 있습니다. 학교에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내부 감사가 우선적으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아까 이재호 평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의견을 저는 전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명확하게 하면 현실적으로 외부감사를 요청하는 데까진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학교 쪽에서 예를 들어서 태도의 변화를 보여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수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낸 내부감사(안) 그것 자체 혹은 그에 상당한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평의원 오동석** :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오늘 회의 중에 결정이

< 간서명 란 > 

내려진 것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부감사 청구하겠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통지를 하고, 다만 2주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느 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것인지 그때 결정을 한다는 것도 통지가 되어야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 감사 의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음 평의회에서 나와서 감사의 문제에 대해서 내부감사로 가늠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때 가서 평의회에서 재론이 가능하다는 정도로만, 다시 받아주는 것도 학교 측의 성의를 봐서 평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알려주면 어떨까요. 이번 회의결과를 통지하면서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면 이 감사 청구를 지연시키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구요. 그동안에 의장단에서 감사에 필요한 것들을 진행하는 동안에 학교 측에서도 의견을 내는 성의를 보여 준다던가 한다면, 평의회에서도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보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니까요.

**의장 박영무 :** 이렇게 정리 합니다. 외부감사청구는 결정이 되었고, 2주 후에 평의회를 개최해서 외부 어느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것인지 결정한다. 단, 오늘 결정한 사항을 학교 측에 통보해서 학교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들어본다.

**평의원 오동석 :**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의원 박철균 :** 학교 측에 재론할 여지를 줄 수 있겠다는 거지요.

**의장 박영무 :** 학교측이 재단이 감사대상에 포함된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감사 방안을 수용하면 재론 할 수도 있겠지요.

**평의원 오동석 :** 우리가 제안한 안을 받아들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외부 회계감사 아니고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형식으로 작년과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평의원 임원형 :** 2주 후는 7월 2일입니다.

**부의장 주동표 :** 2주후에 어느 기관에 할지를 알아보고, 그 외 사항은 물밑 접촉을 하시지요. 의장단에 의견을 제안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2주 후에 평의회에 나와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세요.

**평의원 이재호 :** 제가 메시지는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부의장 주동표 :** 학교에서 그런 정도로 동의만 해준다면 누가 외부감사를 원하겠습니까. 외부감사를 우리가 결의를 했지만, 원하는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

< 간서명 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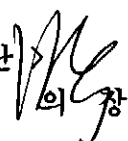
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의장 박영무** :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평의원 이재호** : 기획처장뿐만 아니라 총무처장이, 오늘 같은 경우 특히 결산자문 관련이기 때문에 총무처장이 출석을 했어야 하고,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평의원회 규칙 위반입니다. 그런 사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답변도 없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평의원회 규칙10조에 의하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출석하게 하고 의견제출 요청할 수 있고, 그때 해당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벌칙에 해당하는 조항, 규칙 개정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평의원회 규칙 개정은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총장에게 가는 것인데, 규칙개정 요청을 하는 것이 맞지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규칙개정도 차차 해 나가야겠습니다. 모든 구성단체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결 표명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내 보직자들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3번 이상 출석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의 거부하면 인사조치를 총장에게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3번 이상 반복하면 평의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절차를 따라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이순일 교수의 보고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결국 재정문제가 약학대학 준비과정하고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결산 자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이사회 때 그런 결정이 있었고 이어서 교무회의에서는 의결도 아니고 그 의미가 모호한 '확인' 이라는 표현으로 총장대행은, 책임회피를 하면서, 약대 재정 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므로, 자료제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회의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청하고, 출석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 합니다. 세 번째는 종합관, 병원 웰빙센터 등 계약과정을 포함한 건축 진행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대학의 재정문제는 학내 건설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건설재정은 대학의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대학은 학내 건설 관련 재정계획을 평의회에서 조차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관행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짓느냐를 구성원들의 대표에게 제시하여야합니다. 평의회가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는데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펀드 사례와 유

< 간서명 란 >  
  
의장



사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의혹이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수회 신문(독류청론, 2010.6.7) 3페이지 보십시오. 다 아는 얘기지만 김우중씨 문제 소재목하에 대학 및 부속병원의 부채 78억과 313억 관련 ..... 정확하게 밝혀지고 기록으로 남겨져야합니다. 참고로 2008년 기준으로 교육연구 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조달청 건설 단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최소한의 비교자료는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건축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 관련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학재무회계규정에 의하면 1억원 이상에 공사는 경쟁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학들이 사실이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고 있고, 사학비리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학내에서 세 군데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과 진행 사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평당 얼마에 짓고 있고, 수의계약을 한 건지 경쟁입찰을 한 건지, 건설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고가 되어야합니다. 교내 각종 건축에 관련해서 펀드투자처럼 조사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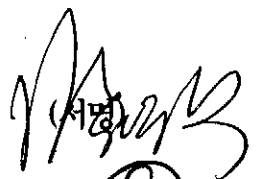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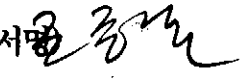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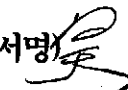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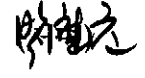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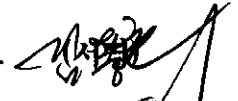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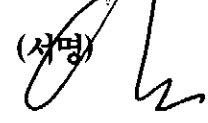

**평의원 김관균 :** 자료가 없으니까 드릴 말씀 없네요.


**평의원 김용호 :** 펀드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힘들게 자료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총학생회에서도 펀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오늘 보면서 저것들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정말 그때는 총학생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 잘못에 대한 철퇴를 반드시 가할 것이다. 현재 등록금 2.4% 올린 것도 모자라서 계절학기 등록금 15%이상씩 올려가면서, 학생들의 돈을 그렇게 끌어 모으는걸 보면서 펀드문제가 학생들에게 지워질 짐이라면 우리 총학생회는 학교에 대해서 이후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때 외부감사보다는 내부 감사를 통해서 학교의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했으면 합니다.

**의장 박영무 :**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걸로 제22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펀드투자 및 분식회계(accounting fraud) 실상에 대한 조사보고서 1부.

2010년 6월 18일

의 장	박 영 무	(서명) 
부의장	주 동 표	(서명) 
평의원	조 중 열	(서명) 
평의원	이 재 호	(서명) 
평의원	오 동 석	(서명) 
평의원	박 철 균	(서명) 
평의원	임 재 수	(서명)
평의원	김 용 호	(서명) 
평의원	임 원 형	(서명) 
평의원	이 해 진	(서명)
평의원	김 관 균	(서명) 
평의원	박 윤 규	(서명)
평의원	박 상 호	(서명)
기 록	진 성 호	(서명)

< 간서명 란 >   
의 장

# 펀드투자 및 분식회계(accounting fraud) 실상에 대한 조사보고서

아주대학교 교수회 특별조사위원회  
2010. 06

위원

독고 윤(경영학부)

이 순일(자연과학부)

이 재호(의학부)

조 종열(전자공학부)

(증빙자료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청시(makim.ajou.ac.kr) 보내드립니다.)  
(학교의 5월25일자 '공식입장'과 6월1일자 '추가해명'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교수회가 별도로 반박문을 제시하였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습니다.)

## 분식회계(accounting fraud)의 정의

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왜곡시키는 범법행위. 위장회계 또는 회계사기라고도  
말함. 2007년 1월부터는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적용됨.<sup>1)</sup>

1)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

< 간서명  의 장

#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동기 및 요약

## I. 조사 동기

- 2009년 4월~5월 : 대학평의원회의 2008회계연도 결산자문에서 학교는 위험자산 매입 현황(이하 펀드투자 내역)에 관한 회계정보를 노골적으로 감췄음.<sup>2)</sup>
- 본교의 펀드투자 및 손실 규모가 2009년 6월 초부터 언론에 보도됨.<sup>3)</sup>
- 2010년 4월~현재 : 대학평의원회의 2009회계연도 결산자문에서도 학교는 펀드 투자 내역을 아주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음.

## II. 특별조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 요약

### (1) 펀드매입 비리와 무책임한 자금관리의 실상

- 2007년 2월~2008년 2월 학교가 매입한 펀드의 금액은 최소 293억원임.
- 펀드취득을 허용한 2007년 12월 법령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펀드매입은 불법임
- 293억원 중 273억원을 해외부동산펀드, 사모펀드 등 극도로 위험한 펀드에 집중 투자하였음. 우량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20억원에 불과했음.
- 학교 자금을 무지하고 무책임하게 관리하였음.
- 293억원으로 우량채권을 매입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펀드투자로부터 발생할 손실은 (평가손실 제외, 기회비용 포함) 약 100억원에 달함.

### (2) 분식회계의 실상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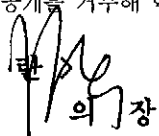
- 재단에서 구성원에게 공시한 2009.02.28.일자 결산보고서와 교과부에 제출한 2009.02.28.일자 결산보고서는 펀드투자 내역에 관한 기장 내용과 형식에서 완전히 다름.
- 구성원에게 공시한 결산보고서 : 보유하고 있는 펀드를 모두 예금으로 위장하였으며, 297만불 선물환 계약과 관련 확정손실 14억원은 아예 기재조차 하지 않았음.
- 교과부에 제출한 결산보고서 : (i) 펀드 매입금액을 60억원 축소하여 233억원으로 기재하였고, (ii) 최소 53억원에 상당하는 펀드를 재학생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유동자금으로 매입하였으나, 발전기금에서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음.

### (3) 결론

- 분식회계는 재단, 학교 및 외부감사의 상호협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분식회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
- 대학평의원회에서 위증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펀드를 법적 근거 없이 매입하고 무책임하게 관리한 담당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그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함.

2) 제12차[2009. 4. 23], 제13차[2009. 5. 7] 및 제14차[2009. 6. 5]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참조하기 바람.

3) "아주대가 등록금이 포함된 대학 적립금 200여억원을 펀드에 투자, 큰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지만 학교 측이 내역 공개를 거부해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세계일보, 2009. 6. 2.)

< 간서명 >  의장

## I. 구성원에게 공시한 2008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의 분식행위4)

- 2008회계연도(2009. 2.28.일 결산) 결산보고서의 대차대조표 또는 ‘현금 및 예금명세서’를 포함한 어떤 명세서도 펀드상품 매입/보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음.
- 구성원에게 공시한 2008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의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서 “특정기금-예금-기타예금 23,312,283,294원”은 펀드 및 수익증권을 위장한 것으로 밝혀짐.

<표1> (출처: 학교 홈페이지)


현금 및 예금명세서

2009. 2.28현재

자금의종류	구분	예금과목	금액	비고
유동자금	예금	보통예금	8,071,126,913	
	예금	기업자유예금	11,060,826,615	
	예금	기타예금	21,584,348,934	
	예금	기업자유예금	6,214,332,878	의과대학
	예금	정기예금	8,081,056,657	의과대학
			소계	55,011,691,997
특정기금	예금	기업자유예금	4,852,176,493	
	예금	정기예금	27,500,000,000	
	예금	기타예금	23,312,283,294	
	예금	기업자유예금	733,279,970	의과대학
			소계	56,197,739,757
합계			111,209,431,754	

- 펀드 및 수익증권을 예금으로만 기재한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
- 교과부(사학진흥재단)도 대학들이 특정기금으로 취득한 펀드상품을 예금으로 분류하는 분식회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15일경 “적립금(특정기금)을 필히 운용형태별(예금, 채권, 주식, 수익증권 및 펀드, 파생금융상품)로 기재, 예금으로만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침을 전국의 모든 사립대학에 하달하였음.
- 2007년 2월 16일에 발생한 선물환 계약(297만불)과 관련한 확정손실 14억원에 관한 기재도 전혀 없음.

4) “구성원에게 공시”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를 뜻함. 2008회계연도의 결산자문을 위해 대학평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도 공시한 것과 동일하였음.

<간서명란>   
의과대학장


## II. 학교가 하지못해 밝힌 펀드투자 내역의 전모

- 2009년 4월경부터 대학평의원회는 2008회계연도 결산자문에 필요한 펀드투자 관련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학교는 정보공개를 완강히 거부하다가 그 내역의 일부를 공개하였음.
- 학교가 지금까지 하지못해 밝힌 펀드투자의 전모는 <표1a>와 <표1b> 수준임.

<표1a> 학교가 밝힌 펀드투자 현황				
2010. 4. 26.일자				
예치기관	종 목	계좌수	원금	펀드평가
6개 증권사	주식형/부동산펀드	3	38억	[213억기준]
	주식형 펀드	2	30억	* 평가손실 : 약 -41억원
	주식형 펀드	1	10억	* 손실율 : 약 -19.4%
	혼합형 펀드	2	70억	
	주식형 펀드	1	10억	
	주식형/부동산펀드	6	55억	[233억기준]
합 계		15	213억	* 평가손실 : 약 -40억원 * 손실율 : 약 -17.2%

\* 펀드 중 2009.12월말 원금을 상회한 혼합형펀드[1계좌] 20억원은 환매함.  
\* 2010.4월26일 현재 펀드는 213억원이며, 원금대비 약 -19.4% 평가손익 상태임.  
\* 환매펀드 20억원을 포함한 233억 기준으로 평가손실은 -17.2%임.  
\* 상기 평가손실은 손실이 확정된 것이 아닌 4월말 기준 평가손실을 의미함.

펀드 매입에 대해 학교가 고수하던 주요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2월 28일 현재 학교가 보유하던 펀드는 233억원이었으나, 동년 12월말 원금을 회복한 펀드 20억원을 환매하였다.</li> <li>• 당시 신동우 총무처장이 단독으로 펀드를 취득하였다.</li> <li>• 유가증권 별로 매입날짜, 매입금액, 평가액, 취득 금융기관, 종목 등을 밝힐 수 없다. 특히 금융기관의 이름을 밝히면 해당 금융기관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어쨌든 밝힐 수 없다.</li> <li>• 펀드매입은 적법했으며, 분식회계는 없었다.</li> </ul>

< 간서명 >  의 장

### III. 대부분의 펀드 매입은 불법으로 밝혀졌음.

- 2009회계연도 결산자문에서 평의원회가 펀드 매입날짜를 요구하자, 학교는 결국 지난 4월 30일에 추가로 정보를 제공하였음 : <표1b> 참조.


<표1b> 펀드 매입 시점(2010.4.30.일에 처음으로 밝힌 것임)

투자시기	계좌수	금융기관수	종 목	금액	비고
2007.2월	2	1	부동산펀드	28억	2009.12 20억 환매 [233억]
.3월	3	1	"	30억	
.5월	2	2	주식형펀드	20억	
.6월	1	1	"	20억	
.8월	1	1	"	10억	
.10월	1	1	혼합형펀드	60억	
.11월	2	2	주식형/혼합형펀드	20억	
2008.2월	3	1	주식형펀드	25억	
합계	15	6개 증권사		213억	

- “펀드 취득이 적법하다”고 우기던 학교의 주장

과거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통화안정증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 금융채 등의 채무증서(채권)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7년12월28일자** 동 규칙의 개정 이후 증권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펀드매입은 적법했다.

- 학교 측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2007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펀드 매입은 불법한 것으로 판단됨.

< 간서명 란  의장

III. 구성원에게 공시한 결산보고서와 교과부에 제출한 결산보고서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sup>5)</sup>

<표2> 구성원에게 공시한 결산보고서와 교과부에 제출한 결산보고서 차이

주요 내용	구성원에게 공시한 결산보고서	교과부에 제출한 결산보고서
현금 및 예금명세서	<표1>뿐임.	<표1>에 추가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2009.2.28.일자 잔액증명서를 첨부.
법이 요구하는 현금 및 예금명세서 양식		자금의 용도(유동자금, 특정기금), 금융기관 이름, 계좌번호, 계좌별 잔액, 이자율 등을 기록해야 함. <표1>만은 법이 요구하는 양식과 일치하지 않으나, <표1>에 잔액증명서를 첨부하면 법이 요구하는 양식을 같음하게 됨.
실제 펀드 매입금액이 293억원에 관한 기재	없음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특정기금 562억원 중 233억원에 상당하는 유가증권이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장하였음. 아래 <표3> 참조 바람.
펀드 수수료에 관한 기재	없음	원금의 일부로 위장 기재
297만불 선물계약에 관한 기재	없음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선물환 계약에서 13.3억원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지급을 보류하고 있고, 전년도에 발생한 0.64억원 손실은 기지급한 사실을 밝혔음.

5) 조사위는 학교가 교과부에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교과부(사학진흥재단)로부터 입수하였음.

< 간서명 란

  
의 장



**<표3> 교과부에 제출한 결산보고서 page 65에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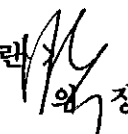
특정기금에 관한 추가 설명(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기말장부가액	유가증권 투자금액	평가이익	평가손실	유가증권 기말평가액
연구기금	6,117	2,000	-	(920)	1,080
건축기금	15,663	6,000	-	(2,423)	3,577
장학기금	1,059	-	-	-	-
퇴직기금	1,317	-	-	-	-
발전기금	32,042	15,312	-	(6,960)	8,352
합 계	56,198	23,312	-	(10,303)	13,009

상기 유가증권 중 ... 각 기금별로는 시가총액이 취득가액의 1/2이하로 하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학진흥재단의 “적립금 투자손실의 인식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따라 평가충당금은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IV. 사학기관의 펀드와 관련한 재무·회계 법규**

1. 기금은 그 기금의 목적대로 써야 함.
2. 펀드(수익증권)매입의 재원을 연구기금, 퇴직기금, 장학기금, 건축기금, 발전기금 등으로 분류해야 함.
3. 각 기금의 1/2을 초과해서 펀드(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없음.
4. 각 기금 안에서 취득한 펀드(수익증권)의 시가(時價) 합이 매입금액 합 의 1/2 이하가 되면 시가로 기재해야 함.

< 간서명 란  의 장

## V. 조사위가 확인한 펀드 투자의 전모6)

<표4> 교수회가 파악한 2009.02.28. 현재 펀드 투자 내역(단위 원)

금융 기관	종목	원금	평가액	비고	매입재원 (유동,특정)
하나 대투	해외부동산펀드	1,812,283,285	900,497,663 (42,904,301)	원금은 선취수수료 18,122,832포함 0안 환차손반영	유동자금
		1,000,000,000	496,885,679 (23,674,143)	원금은 선취수수료 10,000,000 포함 0안 환차손반영	특정자금
	대한파워리서치랩	1,000,000,000	659,716,014		유동자금
대우 증권	주식형펀드	2,000,000,000	801,619,221		유동자금
	ELS	1,000,000,000	940,752,000		?
우리 증권	프런티어배당주혼합 투자신탁 제1호C1	2,000,000,000	1,667,746,990	2009.12.월경 환매 추정	특정자금
	주식형펀드	1,000,000,000	567,015,004		특정자금
삼성 증권	KTB액셀러트 사모주식S10	6,000,000,000	3,576,955,224	원금은 선취수수료 29,850,746 포함	특정자금
	삼성배당주장기주식 투자1-C	1,000,000,000	526,807,857		특정자금
	주택공사채권	2,033,200,000	2,222,800,000	2017년 만기일	특정자금
미래 에셋	AP대표주식형1-C/ 환매조건부채권	1,000,000,000	613,876,081		특정자금
하이 투자 (CJ 증권)	해외부동산펀드	1,000,000,001	305,243,422		특정자금
		1,000,000,002	301,240,732		특정자금
		1,000,000,002	301,240,732		특정자금
	이머징마켓본드	2,000,000,001	1,722,005,251		특정자금
		2,000,000,001	1,722,854,372		특정자금
	하이지구회사플러스 주식투자신탁1호 class C1 4776	1,000,000,001	539,833,312		특정자금
		1,000,000,001	539,833,312		특정자금
500,000,001	269,916,656		유동자금		
<b>합계 (결산보고서 수치)</b>		<b>29,345,483,295 (23,312,283,294)</b>	18,676,839,522	환차손 반영 평가 17,303,140,323	
<b>하이투자증권 이머징마켓본드(2)와 주택공사 장기채권을 제외한 합계</b>		<b>23,312,283,293</b>	13,009,179,899	평가 손실 10,303,103,394	

(※교수회는 우체국 채권, 금융기관 MMT 및 주택공사채권의 성격에 관해 학교에 질의를 하였으나, 학교는 총장직무대행의 지시에 따라 응답하지 않겠다는 비협조 자세를 고수하다가 뒤늦게 6월 1일자 추가 해명에서 우체국 채권과 금융기관 MMT는 비유동성과 위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음. <표4>는 이런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우체국 채권과 MMT를 펀드 및 수익증권에서 제외하였음. 그러나 2017년에 만기가 되는 주택공사채권(20억원)은 수익증권으로 포함시켰음.)

6) 조사위는 학교가 교과부에 제출한 잔액증명서(금융기관 발행)로부터 펀드투자의 실상을 찾았음.

< 간서명 란



## VI. 교과부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의 분식회계


<표5> 매입재원 별 펀드 투자 내역과 결산보고서 분식회계 실상(단위: 억원)

매입 재원*	재원별 매입액	비고				결산보고서 분식회계 실상
		금융기관	종목	매입 금액	평가 금액	
유동 자금	53	하나대투	해외부동산펀드	18	9.0	발전기금에서 매입한 153억원 펀드의 일부로 분식함.
			파워리서치랩(주식형펀드)	10	6.6	
		대우증권	주식형펀드(일임형)	20	8.0	
		하이증권	지주회사(주식형펀드)	5	2.7	
특정 기금	230	하이증권	지주회사(주식형펀드)	20	10.8	연구기금에서 매입한 것으로 분식
		삼성증권	사모주식펀드	60	35.8	건축기금에서 매입한 것으로 분식
		하나대투	해외부동산펀드	10	4.9	발전기금에서 매입한 153억원 펀드의 일부로 분식함
			우리증권	배당주혼합 주식형펀드	20 10	
		삼성증권	배당주장기주식	10	5.3	
		미래에셋	환매조건부채권	10	6.1	
		하이증권	해외부동산펀드	30	9.1	펀드 매입금액에서 누락시켜 총매입금액 60원 축소
			이머징마켓본드	40	34.4	
		삼성증권	주택공사장기채권	20	22.2	
미상	10	대우증권	ELS	10	9.4	발전기금에서 매입한 153억원 펀드의 일부로 분식함
	2007년도에 20억원이 특정기금, 10억원이 유동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하였지만, 2008년도에 남아있는 10억원의 재원은 미상.					
합계	293			293	187	233

(\*: 매입재원은 2007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상의 계좌번호와 대조하여 추적했음.)

- 하이증권에서 매입한 이머징마켓본드 2계좌(40억원)와 삼성증권에서 매입한 주택공사채권(20억원)을 유가증권 매입금액에서 누락하였음.<sup>7)</sup>
- 유동자금으로 산 펀드를 발전기금으로 산 것처럼 위장 기재하였음.
- 특정기금으로 매입했다는 펀드에 해당부서장의 지출결의서(동의서)가 없음.
- 총무처장이 적립주체가 분명한 특정기금에 대한 자금사용 전결권을 갖는다는 학교 측 주장은 어불성설임. 학교 측의 주장대로 총무처장이 단독으로 펀드를 매입했다면, 학교는 특정기금을 무책임하게 운용·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절차와 내규마저 심각하게 위반하였음.

7) 학교는 6월 1일자 소위 '추가해명'에서 펀드매입 금액을 60억원 축소한 이유를 이머징마켓본드와 주택공사채권(2017년 만기)을 유동자금에서 산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음. 위 해명은 (1) 특정기금에서 산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고, (2) 유동자금에서 산 다른 펀드들은 펀드매입금액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앞뒤도 맞지 않는 것임.

< 간서명 란  >

## VII. 분식의 동기 및 재단과 외부감사의 역할

### (1) 분식회계의 동기 : 정직한 기장이 초래할 문제

1. 유동자금(등록금)으로 해외부동산펀드 등 매우 위험한 자산을 매입한 사실이 결산보고서에서 나타나면 무책임·부도덕한 학교경영을 그대로 드러남.
2. 유동자금으로 산 펀드를 별도로 기장하면 재무제표 상에 원금손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 결과 펀드투자의 총체적인 실패가 드러남. (유동자금으로 산 펀드의 결산일 평가액은 매입금액의 1/2을 미달하였음.)
3. 이머징마켓본드 2계좌(각 20억원)와 주택공사채권(20억원) 중 어느 것이라도 특정기금으로 산 펀드로 기장하면 펀드매입금액이 각 기금별 취득 한계인 1/2을 초과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
4. 특정기금으로 펀드를 취득하려면 해당부서장(연구처장, 기획처장, 또는 독립운영부서장)의 지출결의(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 측의 주장대로 총무처장이 단독으로 펀드를 취득했다면 펀드의 매입재원을 연구기금, 건축기금 및 발전기금으로 분류할 수 없음. 그렇다고 유가증권 별로 펀드 매입금액을 정직하게 밝힌다면, 일부 유가증권의 원금손실을 재무제표 상에서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금은 그 기금의 목적대로 써야한다”는 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남.
5. 교과부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대학평의회 결산자문 회의록을 첨부하면, 펀드투자와 관련한 제반 문제가 드러남.

### (2) 구성원에게 공시한 결산보고서와 교과부에 제출한 결산보고서는 분식회계의 방법과 범위가 달라짐.

-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평의회와 구성원에게는 아예 모든 것이 예금인 것처럼 속이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음.
- 법과 회계 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교과부에게는 ‘법대로’ 기금투자를 했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미되, 원금손실을 재무제표 상에서 인정하지 않도록 총 매입금액과 매입재원을 속였음. 즉, 펀드매입금액을 60억원 축소한 후(293억원 → 233억원), 매입재원을 ‘적당히’ 연구·건축·발전기금으로 배정해서, 각 기금 안에서 평가액이 1/2을 넘도록 짜 맞췄음.

- 그러나 2009년 5월말 학교가 교과부에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통해 펀드 투자 관련 기사가 2009년 6월경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학교는 평의원회와 학생회에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실패, 불법투자 및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해 정보공개범위를 극도로 제한하였음. 그 결과 거짓이 거짓을 낳는 한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음.

### (3) 재단과 외부감사(성도회계법인)의 역할

- 2009년 5월 22일자 이사회 회의록 : 감사 윤성복은 펀드 매입금액이 293억원임을 알고 있었음. (그림 1 참조)

#### <그림 1> 2009년 5월 22일자 제276차 이사회 회의록 감사 윤성복 발언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지요?

감 사 윤 성 복 : 우선 아주대학교 교비회계와 관련하여 성도회계법인에서 실시한 결산감사 결과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무제표는 2009년 2월 28일과 2008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내용을 사회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첫 번째로 2008회계연도 감사와 관련하여 아주대학교는 기금 562억원과 일반 유동자금 407억원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총액 중 수익증권 등 위험자산에 총 293억원을 투자하여 기말기준 107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경영지원과-1429(2009.3.25) 공문 및 한국사학

- 재단은 교과부에 제출한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목록을 대학평의원회 결산자문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음.
- 뒤늦게(2010년 5월경) 평의원회 결산자문회의록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그 이유를 2009년 5월 22일자 이사회 서문호 총장의 발언으로 둘러댔음.
- 2009년 5월 22일자 이사회 회의록 : 서문호 전총장은 이사회에서 평의원회 결산자문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거짓으로 보고함. (그림 2 참조).

#### <그림 2> 2009년 5월 22일자 제276차 이사회 회의록 서문호 전총장 발언

이사(총장) 서문호 : 학교회계인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예 결산을 대학평의원회의 지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학내사정으로 인하여 기일 내 관할청에 결산 보고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대학평의원회의 지문을 받지 못하고 교무회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학교가 평의원회 자문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지만, 이사장과 재단은 서문호 전총장의 위 회의록 발언의 사실 여부조차도 확인한 적이 없음.

< 간서명 란 >



- 외부감사인 성도회계법인도 교과부(사학진흥재단)의 특정기금에 관한 회계 지침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8) 60억원을 펀드매입금액에서 누락하고, 유동자금으로 취득한 펀드를 특정기금으로 산 것처럼 분식한 기장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함. 위 <표3>에서 유가증권투자분을 제외한 특정기금이 모두 예금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임.
- 결론 : 구성원에게 공시한 결산보고서와 교과부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의 분식회계는 학교(서문호 전총장, 김병관 전총무처장), 재단(윤원석 이사장, 윤성복 감사) 및 외부감사(성도회계법인)의 협조와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본 조사위의 최종 판단임.

## VIII. 펀드 투자에 대한 평가

### (1) 펀드매입 대부분이 불법하고 부도덕함

- 2007년 12월 이전 채무증서가 아닌 수익증권의 매입은 불법함.<sup>9)</sup>
- 2007년 2월에 하나대투와 체결한 297만불 선물환 계약도 불법함.
- 위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 적립금을 교과부 허가 없이 담보로 제공한 행위도 불법함.
- 재학생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유동자금으로 해외부동산펀드 등 극도로 위험한 펀드를 집중매입한 행위는 불법했을 뿐 아니라 부도덕함.

### (2) 무모하고 전문성을 총체적으로 결여했음

- 대학의 의사결정구조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만큼 신속할 수가 없으므로, 대학은 주로 안정성 위주(예컨대, 정부 및 회사 채권)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나, 아래 <표6>처럼 학교는 초(ultra)위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였음.
- 위험분산에 관한 고려도 전혀 없었음. 은행분산은 위험분산과 관련 없음.
- 297만불 선물환 계약도 전문가 의견을 구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것임.<sup>10)</sup>

8) 교과부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사학진흥재단의 ‘적립금 투자손실의 인식관련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에 따라 평가충당금은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기록은 성도회계법인도 펀드매입을 예금으로만 기재하지 말라는 교과부의 회계 지침을 알고 있었음을 뜻함.

9) 채무증서와 수익증권의 차이 : 채무증서에는 발행자에게 원금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예 : 약속어음), 수익증권은 수익이 발생한다는 조건 하에 지급을 약속한 증서이므로 원금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음(예 : 주식).

10) 학교 측은 선물환 계약의 기초자산인 해외부동산펀드의 가치가 미화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헤징(hedging) 목적으로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변명하지만, 기초자산의 미화 가치가 선물환 계약을 정산할 때 변동하거나 선물계약의 정산 시점과 해외부동산펀드의 환매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선물환 계약은 헤징 기능을 상실함.



**<표6> 293억원 위험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금액(억원)	비중(%)	
해외부동산		58	19.8	소계 89.8%
주식	사모주식	60	20.5	
	(일반)주식	105	35.8	
채권	이머징마켓	40	13.7	
	(회사)채권	10	3.4	
	(공사)채권	20	6.8	
합계		293	100.0	
(주) 혼합형 펀드의 20억원을 주식과 채권으로 양분하였음.				


**(3) 펀드 투자의 손실 추정**

- 원금을 회복하면 환매한다고 낙관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펀드투자로 발생한 손실규모는 94~110억원에 달함.

<b>&lt;표7&gt; 펀드 투자로부터 발생한 손실 추정</b>		
(주: 해외부동산 펀드를 제외하고 모든 펀드를 원금에서 환매한다고 가정. 환매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평균 3년으로 가정)		
손실 내용	추정 금액	비고
AAA채권 이자수입(기회비용)	41~49억원	(293억원 중 주택공사채권 20억원 제외) 273억원 X 년5~6% X 3년
선물환 계약에서 발생한 확정손실	14억원	6천3백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13.4억원은 지급 보류 중.
원금회복이 불가능한 해외부동산 펀드에서 발생할 손실 (50% 손실추정)	30억원	부동산버블이 극도에 도달한 2007. 2월과 3월에 취득했으므로 원금 58억원 회복은 불가능할 것임.
펀드 운용 수수료	8.2~16.4억원	273억원 X 1~2%/년 X 3년
선취 수수료	0.6억원	기 지급했으나 원금으로 위장
<b>손실 합계(approx.)</b>	<b>94~110억원</b>	

**(4) 신뢰상실은 금액으로 형용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

- 은폐, 분식회계, 위증 등 학교경영진의 부정직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의 신뢰상실은 금액으로 형용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
- 학교는 등록금을 산정하고 학생들을 설득할 자격을 상실하였음.

< 간서명 란 > 

## IX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 학교는 자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음.
- 동 규칙 제52조 ②: 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의 사업체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부터 매월말 현재의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 동 규칙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법인과 학교의 수입 · 지출 · 물품 및 재산의 수급 · 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요약

- 2009. 2. 28.일 현재 최소 293억원에 달하는 펀드 또는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있었음. 펀드매입과 자산관리는 무지하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졌음.
- 구성원에게 공시한 2009회계연도 결산보고서와 교과부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결산보고서는 펀드보유 현황에 관해 보고한 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다름.
- 구성원에게 공시한 결산보고서는 보유하고 있는 펀드를 모두 예금으로 위장하였으며, 297만불 선물환 계약과 관련 손실은 아예 밝히지도 않았음.
- 교과부에 제출한 결산보고서는 주식에서 562억원 특별기금 중 233억원이 유가증권이며, 연구기금 20억원, 건축기금 60억원, 발전기금 153억원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i) 233억원은 실제 유가증권 매입금액보다 최소 60억원이 모자라고, (ii) 펀드매입의 재원이 연구 · 건축 · 발전기금이 라는 근거(지출결의서 또는 동의서)가 없으며, (iii) 최소 53억원에 달하는 펀드는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유동자금으로 매입한 것이지만, 발전기금에서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였음.
- 분식회계는 재단, 학교 및 외부감사의 상호협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함.
- 당시 담당자와 관리 책임자의 불법행위 및 무능/무책임을 감안할 때, 이 분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함.

< 간서명 란 >

